

OECD 용역보고서

# 베트남 경쟁법에 관한 연구

2011. 12. 21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 목 차 □

제 1 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제2장 베트남의 일반현황 .....	4
I. 자연환경 .....	4
II. 역사 .....	6
III. 정치 .....	9
IV. 경제 .....	11
V. 사회와 문화 .....	15
VI. 법제도 .....	18
제3장 베트남 경쟁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 .....	25
I. 베트남 경쟁법의 개요 .....	25
II. 경쟁제한적 합의의 규제 .....	33
III. 시장지배적지위 및 독점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	48

IV. 경제력집중의 규제 .....	59
V. 불공정행위의 규제 .....	68
<b>제4장 베트남 경쟁법의 집행체제 및 절차 .....</b>	<b>77</b>
I. 집행기관 .....	77
II. 집행절차 .....	83
III. 특징 및 시사점 .....	90
<b>제5장 결어 .....</b>	<b>96</b>
◆ 첨부 1 ◆ 베트남 경쟁청 조직도 .....	100
◆ 첨부 2 ◆ 베트남 경쟁법(영문) .....	101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목적

1992년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인 베트남 공산당이 당원들이 정부 고위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정책은 전권을 가진 공산당 정치국이 결정한다. 공산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고 이들은 단일 후보명단으로서 선거인들에게 인준 받는다.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으로 대체로 농업에 바탕을 둔 중앙계획경제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1975년 베트남 전쟁 종결 이후 비효율적이고 더러는 투명하지 못하게 관료들이 추진한 경직된 농업 집산화·국영화 정책으로 인해 경제 재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1986년 경제에 시장원리와 성과급제 등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민간기업의 활동을 허용하였다. 정부는 생산증대를 위해 성과급제를 장려하면서도 비능률적인 국영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등 제한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했다.

2004년 12월에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경쟁법(Competition Law)」을 도입하여 2005년 7월에 시행하였다. 이 법에서는 경쟁제한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및 독점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집중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그 위반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제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의 주요 내용 중에는 선진 경쟁당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단계판매의 규제와 같이 선진 경쟁당국의 경쟁법에서는 보기 힘든 규제들도

포함되어 있어 독특한 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늘어나고 양국 간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학문적인 목적의 연구 필요성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베트남의 경쟁법에 대해 연구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경쟁법의 도입배경 및 역사이다. 베트남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원리를 대폭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베트남이 경쟁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배경과 입법과정 및 역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둘째, 베트남 경쟁법의 실제규정에 대한 검토 및 비교법적 고찰이다. 베트남 경쟁법의 실제규정이라 할 수 있는 경쟁제한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및 독점적지위의 남용행위, 경제력집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선진국 경쟁법과 비교해 봄으로써 베트남 경쟁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쟁법은 선진국의 경쟁법과 비교할 때 순수한 경쟁법이라기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상응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베트남 경쟁법의 집행체제 및 절차규정에 대한 검토 및 비교법적 고찰이다. 경쟁법의 실제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규정에 대하여 분석하고, 조직과 절차가 독립성·공정성·효율성·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분석뿐만 아니라 행태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같이 한다.

넷째, 베트남 경쟁법의 시사점이다. 베트남 경쟁법의 실체규정 및 절차규정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검토를 활용한다. 베트남은 아직까지 경쟁법 집행의 사례가 많지 않고 법리가 정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연구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 경쟁법의 실체적 규정 및 절차적 규정의 내용과 이에 대한 베트남 내외의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한다.

## 제2장 베트남의 일반현황

### I. 자연환경

#### 1. 위치와 지형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은 공산당이 유일정당인 사회주의 공화제 국가로서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동쪽으로는 통킹만과 남중국해, 남쪽으로는 태국만과 인접해있다. 면적은 331,690km<sup>2</sup>로 한반도의 약 1.5배, 최북단과 최남단 간 거리는 1,750km으로 수도는 하노이(Hanoi)이다.

북부의 홍(Hong)강과 남부의 메콩(Me Cong)강이 주요 생활 중심지이며, 특히 메콩강은 길이가 4,220km에 달하는 인도차이나의 젓줄로 티베트에서 발원해 중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를 거쳐 베트남에서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다. 메콩 델타 지역은 총 면적이 22,000km<sup>2</sup>에 달하며 상류에서 운반된 비옥한 흙이 쌀농사에 적합하여 쌀의 곡창지대가 되고 있다. 아울러 메콩강 유역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홍강은 중국 운남성에서 발원해 통킹만으로 흐르는 전체 길이 1,220km에 달하는 분부 지역의 젓줄로 베트남의 2대 곡창지대의 하나인 홍강 델타 지역(15,000km<sup>2</sup> 면적)을 통과하고 있다. 그 밖에 동나이(Dong Nai, 500km)강, 마(Ma, 426km)강 등이 있다.

베트남에는 높이 2,400m를 넘는 산이 11개 있으며, 가장 높은 판시판

(Phan Si Pan, 3,143m)을 비롯하여 뿌르엉(Pu Luong), 랑푹(Lang Cung, 2,193m) 등이 있다.

<그림 1> 베트남 지도<sup>1)</sup>



베트남 동쪽의 바다는 일반적으로 'South China Sea(남중국해)'로 표기되어 있지만, 베트남은 'East Sea(동해)'라고 부른다. 동해상에는 중국 등 인근국과의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호양사(Hoang Sa) 군도(Paracel 군도 또는 西沙群島)와 쓰엉사(Truong Sa) 군도(Spartley 군도 또는 南沙群島)가 있다. 특히 쓰엉사 군도(南沙群島)는 원유와 구리, 망간, 주석, 알루미늄 등

1) 출처 : 외교통상부



많은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베트남,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 여러 나라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2. 기후

베트남 북부는 아열대성, 남부는 열대성 기후이며, 평균 기온은 24.1℃(북부 : 23.2℃, 중부 : 24.1℃, 남부 : 27.1℃), 습도는 월 평균 83%, 평균 강우량은 2,151mm로 한국보다 2.4배 더 많다.

남과 북의 차이가 심하며 평야지대와 고원지대의 기후도 많이 다르다. 하노이는 사계절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며, 평균 기온은 겨울에는 10℃~16℃, 여름에는 37℃~38℃, 평균 강우량은 1,245mm이다. 호치민시와 메콩 델타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27.55℃이고, 우기(5월~11월)와 건기(12월~4월)로 나뉘며 우기의 강우량은 1,979mm이다.

## II. 역사

### 1. 건국신화와 고대국가 발생기

베트남은 강한 바다신인 락 롱 꾸언(Lac Long Quan)과 아름다운 산신인 어우 켜(Au Co)가 만나 100명의 아들이 탄생하였는데, 절반씩 부모를 따라 바다와 산으로 이주하였고, 이 중 어우 켜 여신의 직계 후손인 흥(Hung)이 베트남 최초의 부족 국가인 반랑국을 만들었다는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다.

기원전 690년 흥(Hung)가가 최초의 국가인 반랑국을 건립하고 툽(Thuc)가의 어우락국(BC 257), 쩌에우다(Trieu Da)의 남비엣(BC 207)이 차례로 건국되었다. 어우락국은 중국인들에게 패망하였는데, 한무제는 베트남 북부 지역을 중국 행정 구역의 하나로 편입하여 지역에 부를 설치했다.<sup>2)</sup>

## 2. 중국복속시대와 왕조시대

938년 응오꾸옌(Ngo Quyen)이 중국 남한군을 격파하고 응오왕조를 수립하여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였고, 그 후 19세기 응웬왕조(Nguyen)가 프랑스의 피보호국이 되기까지 약 950년간 베트남은 왕조를 유지하였다.<sup>3)</sup>

## 3. 프랑스 식민시대<sup>4)</sup>

자롱황제 이후 프랑스가 프랑스 선교사 처형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을 무력 침공하여 제압한 뒤 1883년에 베트남은 프랑스의 피보호국으로 편입되었고, 베트남의 왕정세력, 농민, 지식인들은 반프랑스 저항운동을 펼쳐나갔다. 또한 1930년에 창당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독립동맹이 반일 항쟁을 전개하여 호치민이 1945년 9월 2일에 하노이에서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1945년 일본군이 주둔 프랑스군의 무장을 해제하여 약 60년간 프랑스의 통치가 종식 되었으나 2차 대전 후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복귀를 시도, 영국군의 협조 아래 군사적으로 다시 개입하게 되었다.

2) 외교통상부, 「베트남 개황」, 2011. 11, 10~11면 참조.

3) 계경문·김종욱·이경희·Ngyuen Thi Thanh Xuan,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한국법제연구원, 2009, 16면.

4) 계경문 외, 앞의 책, 16~17면.

1946년 3월과 9월에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는 2번의 임시협정을 체결하여 프랑스 연합 내의 인도차이나 연방국으로 인정되었으나, 실질적 독립을 추구한 베트남과 연방 내의 한 자치국으로만 인정한 프랑스 측이 대립하였다. 결국 하노이에서의 무력 충돌에 이어 1946년 12월 전면전으로 확대되었고, 호치민 정권은 서북 산악지역으로 철수하였다. 1949년 프랑스는 베트남공화국을 수립하였으나, 베트남 인민과 군대가 프랑스군에 대한 전국적인 공세를 펼쳐 결국 1954년 5월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에게 승리를 거둠으로써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 4. 대미 항쟁시대와 통일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시대<sup>5)</sup>

1954년 7월, 인도차이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고,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가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북위 17도선의 잠정 군사분계선 설정과 국제 감시위원회 설치 등이 정해져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1956년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55년 수립된 베트남공화국 대통령 응오 디 지엠과 미국이 정권의 통일 거부를 주장하여 총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1963년 격렬한 반정부운동과 함께 지엠 정권은 군사 쿠데타로 붕괴되었고 그 후 계속된 쿠데타 및 미국의 지상군 투입으로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북베트남·남베트남·남베트남 임시 혁명 정부는 1973년 1월에 파리에서 평화협정에 조인하였고, 1975년 4월 30일에 남부 베트남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1976년 7월 2일)이 수립되었다.

---

5) 계경문 외, 앞의 책, 17면.

통일된 베트남은 외국원조의 단절, 낙후성, 심각한 전쟁의 후유증, 미국과 서방의 제재 및 봉쇄정책, 이웃 강대국과의 관계 악화, 캄보디아 침공 등으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에 베트남은 제6차 전당대회를 통해 경제구조 방식과 경제운용방식을 쇄신하고 법률체계를 확립하며 당과 국가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도이머이 정책을 천명하였고, 꾸준한 경제성장과 외교정책으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였다.<sup>6)</sup>

### Ⅲ. 정치

#### 1. 기본 정치체제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제를 국체 및 정체로 하고 있으며, 헌법에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 ‘국회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 ‘국가주석은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으로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은 국가·국회·정부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국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총리)의 권한도 강화되는 추세이다.<sup>7)</sup>

#### 2. 국내와 국제의 정치 변화<sup>8)</sup>

베트남은 1976년 통일 직후 남부에 대한 급속한 사회주의 도입의 실패, 캄보디아 침공(1978년) 및 중·베트남 전쟁(1979년)에 따른 과도한 전쟁 비용

6) 주한베트남대사관, “베트남(베트남-한국 수교 10주년 기념)”, 2002, 12~18면 참조.

7) 계경문 외, 앞의 책, 19면.

8) 계경문 외, 앞의 책, 17~18면.

부담과 서방국가의 원조 중지 등으로 80년대 후반까지 국민경제는 악화상태였다. 1980년대에 초반 신경제 정책(1980~1982년)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는 미흡하였고,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도이 머이(Doi Moi) 정책을 채택하여 대외 개방을 통한 외국과의 경제 협력의 확대와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였다. 1989년에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수를 계기로 대외관계가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다변화와 다양화를 기조로 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및 국제 협력에 동참하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대서방 관계가 급진전으로 개선되었으며,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하였다. 최근에는 법률·제도의 정비를 통한 개혁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 관리하의 다부문 시장경제체제인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 틀에서 경제자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또한 제도 및 정부 구조의 혁신과 공직자의 자질 개선, 재정구조 개혁 등의 정부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정치적 안정 유지를 위해 다당제 등 정치적 다원화 요구에 대해서는 불허 입장을 견지하면서 체제 안정을 위한 국민통합 및 경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소수민족 및 종교 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민족조국전선의 활동 강화, 국회의 청원제도 활성화 등으로 다원화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혁개방 추진 과정의 소득격차 심화 현상과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각종 범죄 확산 등이 사회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하고,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 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농촌개발, 빈곤퇴치, 소수민족 배려 정책 등의 노력을 강

화하고 있다.9)

## IV. 경제

### 1. 경제성장률

베트남은 2000년 이후 6%대 성장률에 진입한 이래 2002~2004년 들어 7% 성장률을 달성하며 GDP는 715억 달러 규모에 달하였다. 2008년 초 경제과열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로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이 있었으나, 2008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6.5%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2000~2007년 산업분야 생산증가율은 3.46~4.34%로 GDP 성장에 가장 기여도가 컸으며, 서비스분야 생산 증가율은 2.23~3.5%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등 베트남 산업분야가 GDP 성장 기여도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007년 베트남 산업분야의 생산은 17.1% 증가한 359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었다.10)

2008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7%)로 잡았던 것보다 낮은 6.23%로 기록되었으며, 이 같은 경제 성장은 세계 경기침체에 비취볼 때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에는 국제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베트남의 수출과 투자 모두 감소하였으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6.78%의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2011년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대외경제여건의 악화, 통화 긴축정책 추진 등으로 6%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1)

9) 외교통상부, 「베트남 개황」, 2009. 5, 35~36면 참조.

10) 계경문 외, 앞의 책, 19면.

11) 외교통상부(2011), 앞의 책, 59면.

<표 1>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sup>12)</sup>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경제성장률(GDP, %)	8.2	8.5	6.23	5.3	6.78
소비자물가상승률(%)	6.6	12.6	22.9	6.88	11.75
산업성장률(%)	17.0	17.1	14.6	7.6	14.0
수출(억, 달러)	397	483	629	566	716
수입(억, 달러)	449	608	804	688	840
무역수지(억, 달러)	-48	-141	-175	-122	-120

## 2. 물가

베트남의 물가상승은 2006년 8.3%에 이어 2007년 12.63%를 기록하였고, 2008년에 최고치인 22.9%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 정책으로 6.88%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2011년 9월 현재 유럽발 재정위기, 식음료 가격 상승, 동화 가치 하락 등으로 평균 물가는 23.3% 상승하여 물가 안정이 향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최대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3. 대외교역 현황

12) 출처: 베트남통계청

베트남의 국제교역 규모가 지난 1995년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로 12년 만에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00년 이후 국제 교역 규모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2004년 5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향후 베트남 경제발전에 속도와 패를 함께 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부터 수입이 수출을 크게 초과하면서 무역 수지 적자폭이 늘어나 2008년에는 적자액이 17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수입은 전년대비 16.8% 증가한 840억 달러, 수출은 20.3% 증가한 716억 달러로 전체 총 교역 금액은 1,55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4. 외국인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는 1996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아시아 각국의 경제 위기로 인해 1997년부터는 외국인 투자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외국인 투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0년 말 기준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총 13,427건과 20,01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편 최근 세계 경제 위기와 거시 경제 불안정으로 외국인 투자는 다소 둔화 하고 있다.<sup>13)</sup>

<표 2> 연도별 외국인 투자 현황<sup>14)</sup>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투자건수	723	798	833	1,554	1,414	1,054	1,237
투자금액	2,222	4,002	7,839	18,718	60,271	21,400	19,886

13) 외교통상부(2011), 앞의 책, 64면 참조.

14) 출처 : 베트남통계청



## 5. 우리나라와의 관계<sup>15)</sup>

베트남은 한국의 제6대 흑자수출 대상국(2010년 기준)이다. 또한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 이은 제9위 교역국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간 50억 달러를 넘는 흑자를 내는 시장으로 2003년부터 25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한 이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무역 불균형이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자본재 및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베트남은 농수산물 등 1차 상품과 일부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양국간 산업구조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현지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제3국에 수출하여 베트남의 수출 증대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

<표 3> 우리의 대 베트남 교역현황<sup>16)</sup>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교역액	41.2	48.5	71.5	98.4	95.2	129.8
수출액 (증감률)	34.3 (5.4)	39.3 (14.4)	57.6 (46.7)	78.0 (35.5)	71.5 (-8.4)	96.5 (35)
수입액 (증감률)	6.9 (3.1)	9.3 (5.0)	13.8 (49.7)	20.4 (46.4)	23.7 (16.3)	33.3 (40.5)
수 지	27.4	30.0	43.7	57.7	47.8	63.2

15) 외교통상부(2011), 앞의 책, 126면 참조.

16) 출처 : 한국무역협회

## V. 사회와 문화

### 1. 인구구조<sup>17)</sup>

전체 인구는 약 8,690만명(2010년 기준)으로 추산되며, 인구밀도는 260명/km<sup>2</sup>,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98.1명으로 10년 전과 대비(여자 100명당 남자 96.7명)하여 여초현상이 점차 완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수도인 하노이에는 약 656만명, 호치민에 약 739만명, 하이퐁에 약 185만명, 다낭에 약 92만명, 켄터시에 약 119만명이 거주하는 등 전체 인구의 43%가 홍강 및 메콩 델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베트남 인구구조는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로 24세 이하의 젊은 층이 약 4,300만명에 달하여 적어도 향후 20~30년간 경제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인력 공급이 가능하고, 노동력의 질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 국민의 70.4%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앞으로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이 매우 급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베트남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서 이주하려면 지역 경찰에 등록 신고를 거쳐 주민등록부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 승인 획득이 어렵다.

베트남의 민족은 Viet족이 전 국민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이, 므엥, 크메르 등 54개 산악소수 민족, 화교(약 100만명)로 구성되어 있다.

### 2. 언어<sup>18)</sup>

---

17) 외교통상부(2011), 앞의 책, 110면 참조.

공용어로 베트남어를 사용하며, 4종의 소수민족 언어를 법률상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어는 중국어의 4성조보다 많은 6성조로 발음의 장단과 고저에 따라 의미가 다르며,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 한자어가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자를 사용했으나 8-9세기경에는 한자의 뜻과 음을 차용해 만든 쯔놈(Chu Nom)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17세기 초부터 18세기 말까지 베트남에 들어온 예수회 사제들이 쯔놈으로 된 베트남어를 라틴문자로 옮겨 적기 시작한 것이 베트남 문자의 효시가 되었다. 1878년 프랑스 식민정부는 현재의 베트남어를 국어로 공인하고 1882년부터 각급 학교와 공문서에 적용하는 법령을 공포했으며, 1915년과 1919년에 각각 하노이와 후에(Hue)에서 과거를 폐지하면서 한문과 쯔놈은 쇠퇴하고 현재의 베트남어가 국어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 3. 종교<sup>19)</sup>

베트남에는 불교를 비롯하여 가톨릭, 까오다이교(Cao Dai), 호아하오교(Hoa Hao) 등의 종교가 있다. 베트남 국민의 2/3가 불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등록된 신자는 약 1,000만명(인구의 약 11.7%)으로 전국적으로 사찰이 많다.

가톨릭은 16세기경부터 포르투갈과 프랑스 사제들에 의해 전파되었으며 신자는 약 550만명(인구의 약 6.5%)이다. 개신교는 17세기경에 전해졌으며 신자 수는 약 100만명(인구의 약 1.1%) 정도로 추정된다.

---

18) 외교통상부(2011), 앞의 책, 111면 참조.

19) 외교통상부(2011), 앞의 책, 112면 참조.

까오다이교는 1925년 프랑스 식민지 관료였던 응오 반 찌에우(Ngo Van Chieu)가 세운 종교로서 유교·불교·도교·기독교의 교리를 종합해 완성한 것이다. 일본과 협력하여 프랑스에 대항하는 항불 운동을 벌였으며, 남부 떠이닝(Tay Ninh)성에 교단 본부가 있고, 신자 수는 약 240만명(인구의 약 2.8%) 정도이다.

호아하오교는 1939년에 찌우 독(Chu Doc) 지방의 호아 하오 촌락의 후인 푸 소(Huynh Phu So)가 사원과 승려를 없애고 종교 의식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불교 교리를 단순화시켜 만든 종교이다. 민족주의적 종교로 프랑스 세력을 물리치는데 공헌했으며, 신자는 약 130만명(인구의 약 1.5%)으로 남부지방에 신도가 집중하고 있다.

베트남의 토속신앙은 도교와 유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상생활에 미신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 4. 여성의 사회활동

베트남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매우 활발하며, 공산당과 정부, 단체 등의 요직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현 12대 국회의원의 25.7%(총 493명 중 127명)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여, 일정 비율(종업원 100명 이하 업체의 50%, 종업원 100명 이상 업체의 30%)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VI. 법제도

베트남은 기원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고, 그 이후에도 많은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법제도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초기 중국 한나라가 지배할 때까지는 주로 베트남인의 저항을 진압할 목적으로 각종의 형법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고, 행정·경제·사회 문화에 관한 각종 규정은 베트남인을 중국의 법제에 동화시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후 독립왕조 하에서는 왕조의 중앙집권 봉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배하에서는 식민지배 통치의 용이함을 위해 통킹(Tongking), 안남(Annam), 코친차이나(Cochinchina) 등 세 지역으로 분할 통치를 실시하면서 유형 상 베트남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한 법과 서른 다른 세 개의 지역에서 상이하게 적용한 법으로 나뉘었다.<sup>20)</sup>

베트남은 1953년 이후 현재까지 약 170개의 법률이 국회에서 공포되었다. 최근에는 투자법·기업법·각종 세법 등의 제·개정으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다 좋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베트남 경제 개발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법제 정비를 하고 있다.

### 1. 법원<sup>21)</sup>

#### (1) 헌법

---

20) 계경문 외, 앞의 책, 224면.

21)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법령구성 체계”, 2005.8, 15~17면.

전국 범위의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규정으로 국회에 의해서 제정 및 개정되는 최고의 법적 효력을 보유한 최상위 법을 말한다.

## (2) 법률

헌법 다음으로 높은 법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헌법의 특정한 문제를 구체화하거나 국회의 권한과 임무에 속한 특정한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규범을 말한다.

## (3) 법령(Ordinance)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되고 국가주석이 공포하는 법규범이다.

## (4) 영(Order)

국가주석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주석이 공포하는 법규범이다.

## (5) 의정(Agreement by Conference)

특정한 범위에 속한 법적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목적 또는 법 시행을 위해서 정부가 공포하는 법률 하위의 법률 문건을 말한다.

## (6) 통자(Legal Notice)

상급기관(국회, 국회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수상)의 법규범에서 해당분야의 관리를 위임하거나 자신의 관리영역에 속한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부

장관, 부와 동등한 기관의 기관장, 정부직속 기관장이 공포하는 법률 문건을 말한다.

(7) 결정(Decision)

각 기관, 그 기관 직속단위의 활동과 조직에 관하여 해당분야의 경제적 기술적 한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자신의 관리기능 혹은 정부가 위임한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법률 문건을 말한다.

(8) 지시(Instruction)

해당기관과 상급기관의 법률규범 문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분야에 속한 기관과 단위의 활동을 감사하고 협의하고 독촉하고 지도하는 방법을 규정한 문건을 말한다.

(9) 의결(Resolution)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론과 표결을 거친, 회의제도에 따른 기관의 결정을 말한다. 다수결 혹은 절대 다수결로 표결하는데, 국회와 국회 상무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제명, 국회의 임기단축이나 연장, 헌법의 개정은 정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표 4> 기관별 법률문건 공포권<sup>22)</sup>

기 관 명	공포 가능한 법률 문건	비 고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Hien Phap : 憲法)</li> <li>○ 법률(Luat : 律, Bo Luat : 律)</li> <li>○ 법령(Phap Lenh : 法令)</li> <li>○ 의결(Nhai Quyet : 議決)</li> </ul>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Lenh : 令)</li> <li>○ 의결(Nghi Quyet : 議決)</li> </ul>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Nghi Dinh : 議定)</li> <li>○ 의결(Nghi Quyet : 議決)</li> </ul>	시행령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Quyet Dinh : 決定)</li> <li>○ 지시(Chi Thi : 指示)</li> </ul>	
각부장관, 부급기관장, 정부직속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자(Thong Tu : 通諮)</li> <li>○ 결정(Quyet Dinh : 決定)</li> <li>○ 지시(Chi Thi : 指示)</li> </ul>	시행세칙
중앙직할시 및 성 등 지방인민평의회(지방자 치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Nghi Quyet : 議決)</li> </ul>	
중앙직할시 및 성 등 지방인민위원회(지방 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Nghi Quyet : 議決)</li> <li>○ 지시(Chi Thi : 指示)</li> </ul>	
최고인민법원 재판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Nghi Quyet : 議決)</li> </ul>	
최고인민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Quyet Dinh : 決定)</li> <li>○ 지시(Chi Thi : 指示)</li> <li>○ 통자(Thong Tu : 通諮)</li> </ul>	시행세칙

22) 출처 :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법령구성 체계”, 20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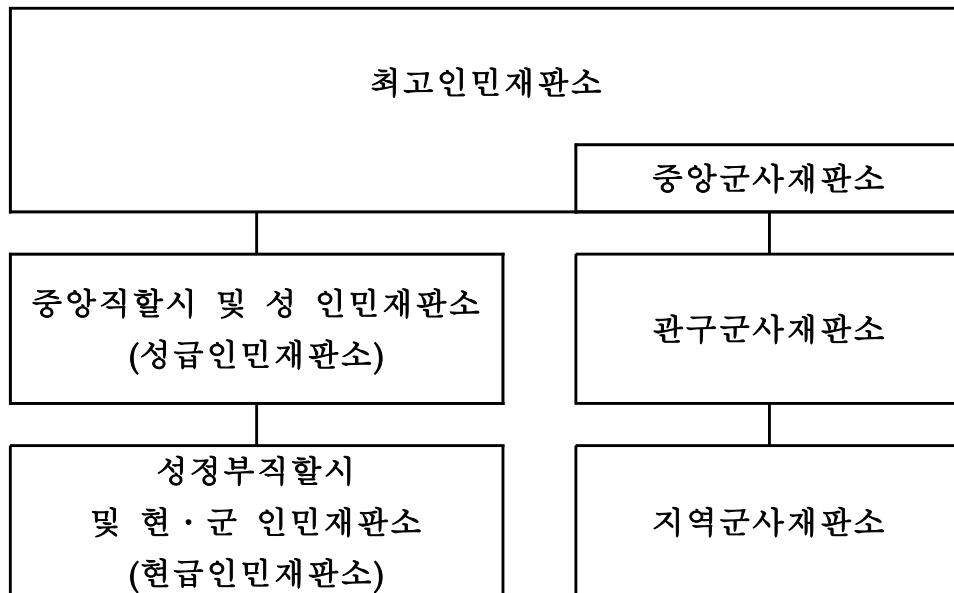


## 2. 사법제도

베트남에 있어서의 '사법(司法)'은 입법 및 행정과 함께 삼권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나 이들 삼권은 국가권력의 각 측면을 의미할 뿐이고, 권력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작용이나 임무로 이해하고 있다. 국가권력은 입법·행정·사법 세 개의 권력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지닌 단 하나의 권력이다. 권력분립에 기초한 '사법' 개념은 1999년 소련식 법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라지고, 단지 국가권력의 행사를 분담하는 분업적인 개념이다.

베트남 인민재판소의 종류는 최고인민재판소, 지방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와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재판소가 있으며, 국회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림 2> 인민재판소 조직도<sup>23)</sup>



23) 출처 :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법령구성 체계”, 2005.8

## (1)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재판소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사법기관이다. 특별히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제1심인 동시에 최종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성급인민재판소의 항소심으로서의 기능과 법령적용상의 잘못을 시정하는 감독심 및 사실오인을 시정하는 재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중앙군사재판소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최고인민재판소에는 형사법정, 민사법정, 경제법정, 노동법정, 행정법정 등 5개의 전문법정이 설치되어 있고, 전문법정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분야 재판의 판결·결정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관련된 법률 검토를 수행한다.

## (2) 지방인민재판소

### 가. 성급인민재판소

성급인민재판소에는 현급인민재판소의 판결 등에 대한 감독심과 재심, 현급인민재판소의 판결 등에 대한 항소심으로서의 기능 수행, 현급인민재판소의 법률의 통일적 적용보장 및 재판을 총괄한다.

### 나. 현급인민재판소

현급인민재판소에는 민사사건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제1심으로서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 (3) 인민참심원

인민참심원은 재판관과 함께 제1심의 재판부를 구성하며, 재판관과 인민참심원은 재판에 있어서 상호 독립적인 지위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인민참심원은 조국전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되는데, 조국전선은 공산당 및 국가와 사회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조직이라 할 수 있어서 공산당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

24) 계경문 외, 앞의 책, 68면.

## 제3장 베트남 경쟁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

### I. 베트남 경쟁법의 개요

#### 1. 일반현황

베트남의 경쟁당국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처럼 행정, 입법, 사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총리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부서도 아니고, 통상산업부 소속의 경쟁청(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VCA)과 경쟁위원회(Vietnam Competition Council, VCC)로 구성되어 있다. 경쟁청은 경쟁법 위반행위 조사 및 경쟁주창활동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고, 경쟁위원회는 경쟁청이 제출한 경쟁법 관련 사건의 위반행위 조사에 대한 심의와 최종 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 경쟁법은 중국보다는 빠르게 도입하였고, 비교적 최근인 2005년부터 시행되어서 아직까지 집행실적이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집행건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사착수 건수 및 최종조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사착수 건수는 2006년 10건에서, 2007년 17건, 2008년 20건, 2009년에는 26건으로 증가하였다. 시정조치가 내려진 건수도 2006년 1건, 2007년 5건, 2008년 13건, 2009년 13건으로 증가하였다. 베트남 항공유 기업(VINAPCO)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40억동(한화 약 2억 3천만원)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장지배력에 대한 심사나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에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경제분석 역량도 크게 부족하여 본격적인 경쟁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시장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절대적으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인구 구성에 비추어 볼 때, 경쟁법에 있어서도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 2. 경쟁법 체계

### (1) 법률 및 시행령

베트남 경쟁법은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하위 법령으로서 시행령(Decree)과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되어 있다. 주요한 시행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경쟁제한적 합의와 시장지배력 남용 등을 규제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Decree 120(The decree of the Government No 120/2005 ND-CP, dated September 30th, 2005)
- 경쟁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한 Decree 05(The decree of the Government No.05/2006/ND-CP on establishment, functions, duties, power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Vietnam Competition Council, dated January 9th, 2006)
- 경쟁청에 대하여 규정한 Decree 06(The decree of the Government No.06/2006/ND-CP on functions, duties, power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Vietnam Competi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  
dated January 9th, 2006)

- 경쟁사건처리절차에 관한 Decree 116(The decree of the Government No 116/2005 ND-CP, dated September 15th, 2005)

실체법에 해당하는 베트남 경쟁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경쟁제한적 합의의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지위 남용의 금지, 경제력집중의 금지<sup>25)</sup>,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이다.

조직에 대하여는 「베트남 경쟁당국의 기능·책임·조직 및 구조에 관한 시행령」과 「베트남 경쟁위원회의 설립·기능·책임·권한·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이 2006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2) 베트남 경쟁법의 주요 내용

베트남 경쟁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표 5>와 같다.

---

25)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표 5> 베트남 경쟁법의 주요 내용

행위유형	세부내용
경쟁제한적 합의의 금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화·용역의 가격을 직접·간접적으로 고정시키는 합의</li> <li>2. 재화·용역의 소비자시장 또는 공급원 분담 합의</li> <li>3. 재화·용역의 생산, 구매, 판매 물량과 수량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합의</li> <li>4. 기술 개발과 투자를 제한하는 협정</li> <li>5.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의 구매나 판매 계약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강요하는 합의</li> <li>6. 다른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 또는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li> <li>7. 합의의 당사자 이외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li> <li>8.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는 것</li> </ol>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지위 남용의 금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총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li> <li>2. 재화·용역에 비합리적인 구매·판매가격을 부과하거나 최저 재판매 가격을 정하여 소비자에 피해를 입히는 것</li> <li>3. 재화·용역의 생산이나 유통을 제한하거나, 시장을 제한하거나, 기술발전을 저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li> <li>4. 경쟁에서 불균형을 만들기 위해 비슷한 거래에서 다른 상업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li> <li>5. 재화·용역의 구매나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사업자에게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과 관련이 없는 의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li> <li>6. 새로운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li> </ol>

행위유형	세부내용
경제력집중의 금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자의 흡수합병</li> <li>2. 사업자의 신설합병</li> <li>3. 사업자의 영업양수</li> <li>4. 사업자간의 합작투자</li> <li>5. 기타 법률에 규정된 경제력 집중</li> </ol>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오인성 있는 표시</li> <li>2. 영업상 비밀 침해</li> <li>3. 사업에서의 강요</li> <li>4. 다른 사업자의 명예훼손</li> <li>5.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li> <li>6. 불공정한 경쟁을 위한 광고</li> <li>7. 불공정한 경쟁을 위한 판촉활동</li> <li>8. 협회에 의한 차별</li> <li>9. 위법한 다단계 판매</li> <li>10. 기타 불공정거래행위</li> </ol>



### 3. 비교법적 고찰

세계 각국의 경쟁법 체계를 비교해 보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쟁법체계 내에 두고 있는 유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경쟁법 아닌 법률에 규정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미국과 EU

미국이나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경쟁법 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 독점규제법의 체계는 역사적으로 크게 2분한다면 거래제한행위 규제와 단독행위 규제로 나눌 수 있고, 합병을 별도의 행위유형으로 보아 3분한다면 거래제한행위 규제, 단독행위 규제, 합병규제로 나눌 수 있다. 1914년에 제정된 FTC법은 제5조에 의해 협조행위와 단독행위 모두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EU 경쟁법의 핵심적인 조항은 EU 경쟁법 제101조와 제102조이다. 제101조는 합의에 의한 거래제한을 규제하고 제102조는 시장지배적기업의 남용행위를 규제한다. 제101조는 수평적 거래제한과 수직적 거래제한 모두를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본다면 EU 경쟁법 제101조와 제102조는 미국 Sherman법 제1조와 제2조에 상응한다. 예를 들어 합병사건은 1989년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제82조에 의해 규제되었는데, 미국에서 Clayton법 제7조가 제정되기 이전에 Sherman법 제1조에 의해 규제되던 것과 대조된다. 그러나 1989년 합병규칙 제정 이후 미국과 EU는 상당히 유사해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EU 경쟁법이 미국과 다른 점은 FTC법 제5조와 같은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FTC법 제5조가 Sherman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법무부가 먼저 Sherman법을 집행하였고 법무부의 법집행

에 대한 한계로 인해 1914년 FTC법을 만들어 FTC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였다는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이 없는 EU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다르게 입법하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볼 수 있다.

2008년에 경쟁법을 시작한 중국의 경우도 경쟁법인 ‘反壟斷法’내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2) 일본과 우리나라

반면 일본이나 일본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경쟁법 내에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獨禁法 제3조에서는 Sherman법 제2조와 제1조의 내용을 받아들여 私的獨占 및 去來制限<sup>26)</sup>을 규정하고, 제19조에서는 FTC법 제5조를 받아들여 불공정한 경쟁방법(나중에 불공정한 거래로 바뀜)을 규정하게 되었다. 일본 獨禁法 상의 私的獨占은 법체계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부당독점과 유사하지만, 미국과 달리 수직적 거래제한을 포함하고 불공정거래행위와 행위유형 면에서 다수가 중첩된다는 점이 독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 of competition)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내용의 측면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와는 그 내용이 상이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유사하다. 즉, 경쟁제한성에 이르지 않고 경쟁수단이나 거래내용의 불공정성만으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의 의미가 일본과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

26) 私的獨占과 거래제한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私的’이라는 전제가 붙은 것은 ‘公的’ 독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 Akira Inoue, 「Japanese Antitrust Law Manual」, Kluwer Law, 2007, 54면.

그런데, 베트남 경쟁법에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쟁법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사업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부당한 광고, 다단계판매 등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부당한 광고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9년에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로 독립시켰고 다단계판매는 처음부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 (3) 경쟁법 체계비교

이상과 같은 논의를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 6>와 같다.

<표 6> 경쟁법 체계 비교

	거래제한행위	시지남용행위	기업결합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미국	Sherman법 제1조	Sherman법 제2조	Clayton법 제7조	-
	FTC법 제5조			
EU	EU조약 제101조	EU조약 제102조	Merger Regulation	
일본	獨禁法 제3조 후단	獨禁法 제3조 전단	獨禁法 제10조 등	獨禁法 제19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9조	공정거래법 제3조의2	공정거래법 제7조	공정거래법 제23조
베트남	경쟁법 제8조	경쟁법 제13, 14조	경쟁법 제16조	경쟁법 제39조

## II. 경쟁제한적 합의의 규제

### 1. 개요

경쟁법을 집행하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쟁제한적 합의의 규제 즉 카르텔 규제는 경쟁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전 EU 경쟁담당 위원이자 현 이탈리아의 총리인 Mario Monti는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암'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듯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는 시장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카르텔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것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처럼 활동하게 되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베트남 경쟁법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경쟁법의 실체법 조항 중 제일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경쟁제한 합의의 유형

베트남 경쟁법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유형을 규정한 후 이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다(법 제8~9조). 세부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정시키는 합의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정시키는 합의란 가격담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price fixing'이라 부르는 유형의 합의이다. 가격은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시장에

서 재화나 용역의 수급을 조절하여 주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심사기준」 27)에 의하면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경쟁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심결례 : 보험수수료 담합사건>

2010년 베트남 경쟁당국은 19개의 보험회사가 가격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17억 VND(약 US \$89,000)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여기에는 가장 큰 보험사인 Bao Viet과 Petro Vietnam Insurance, Bao Minh, Agriculture Bank Insurance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베트남 경쟁당국이 자동차 보험 분야에 존재하고 있던 담합관행을 조사하여 적발해 낸 것이다.

조사는 약 12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전국 자동차보험 시장의 99.7%를 점하고 있는 19개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른 2008년 9월 15개의 보험사 중역들이 만나 향후 적용될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그 후 베트남 경쟁청은 4개의 자동차 보험사가 추가로 합의에 동참하였음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라고 시인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경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경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담합 사실을 인정하여 제재를 내리게 되었다. 법에 의하면 담합이 인정되면 직전년도

27) 개정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1호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당해 사안에서는 0.025%만 부과되었다. 이러한 수준은 경고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베트남 경쟁당국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경쟁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추가적으로 19개의 보험사는 1억동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명령하였다.

보험사들은 아직까지 베트남에서 보험 산업은 초기단계이고 시장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제재수준을 약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에게 당해 합의를 파기하고 시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 주었다. 보험사의 요청사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제재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은 향후 베트남 경쟁당국이 경쟁법을 보다 활발하게 집행할 것임을 시사해 주는 좋은 사례이다.

## (2) 재화나 용역의 소비자 시장 또는 공급원을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

재화나 용역의 소비자 시장 또는 공급원을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란 사업자들끼리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있어 판매처나 공급원을 지정하여 나누어 가짐으로써 경쟁을 제거하는 내용의 합의를 의미한다. 흔히 '시장분할'(market division)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면 당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의하면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3) 재화나 용역의 생산, 구매, 판매 물량과 수량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합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 구매, 판매 물량과 수량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합의란 사업자들끼리 시장에서 물량을 조절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재화나 용역의 생산량, 구매량, 판매량 등 물량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물량합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량이 줄면 결국 가격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물량에 관한 합의는 가격에 관한 합의와 마찬가지로 경쟁 제한성을 띠게 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의하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4) 기술개발과 투자를 제한하는 합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제한하는 합의는 사업자들끼리 기술과 투자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투자를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의 발전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분야에서 이를 제한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된다.

(5)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와 용역의 구매나 판매 계약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강요하는 합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와 용역의 구매나 판매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합의는 사업자들 간에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결제조건이나 공급 혹은 구매조건과 같은 거래조건은 결국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러한 조건에 대한 합의는 가격에 관한 합의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강요하는 합의는 거래를 위한 합의가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지된다.

(6) 다른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 또는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경쟁은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극대화될 수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 또는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 또는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도 마찬가지이다.

(7) 합의의 당사자 이외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

합의의 당사자 이외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일종의 집단적 거래거절(group boycott)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는 것



어느 나라든 입찰담합 행위는 가장 반사회적인 행위 중의 하나로 취급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형사적인 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게 되면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공공 입찰의 경우는 국가의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의하면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들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베트남 경쟁법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 경쟁제한 합의의 금지

#### (1) 베트남 경쟁법상 경쟁제한 합의 금지방식

베트남 경쟁법 제9조에서는 제8조의 제6항 '다른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 또는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와 제7항 '합의의 당사자 이외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 제8항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합의는 관련시장에서 합산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을 가진 당사자에게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우리나라 및 외국의 카르텔 경쟁제한성 심사방식

### 가. 이분법적 심사

우리나라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카르텔의 경쟁제한성 심사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는 공동행위의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컨대 가격·산출량의 결정·제한이나 시장·고객의 할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예컨대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에는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경쟁법의 당연위법(per se illegal)과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간단히 말한다면 당연위법의 원칙은 거래제한 예컨대 합의가 있을 때 그것의 목적이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심사방식이다. 당연위법 원칙을 증거법상 추정(evidentiary presumptions)의 관점에서 보면 일정한 유형의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결정적으로 추정(conclusive presumption)되고 그 추정은 복멸이 불가하기(irrebuttable) 때문에 피고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sup>28)</sup>

---

28) Andrew I. Gavil, William E. Kovacic & Jonathan B. Baker, Antitrust Law In Perspective : Cases, Concepts and Problems in Competition Policy, Thompson and West, 2002, p.162.

반면 합리의 원칙은 거래제한의 목적이나 의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에 미치는 긍정의 효과와 부정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방식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당연위법원칙은 '합리의 원칙을 단축화한 것'("a rather bobtailed application of the rule of the reason")<sup>29)</sup>으로 보기도 한다. 당연위법 원칙은 법집행을 위해 연역적으로 사유하여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축적되면서 판례를 통하여 귀납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30)</sup> 당연위법 원칙과 합리의 원칙의 이분법은 심사방식을 유형화해주기 때문에 법집행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 나. 카르텔 사건에서 시장지배력 의미

카르텔 사건에서 경성공동행위인 경우 시장점유율이 지니는 의미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 ① Socony-Vacuum 사건<sup>31)</sup>

이 사건은 당시 불황에 시달리던 석유시장에서 대형 정유사들이 석유가격의 인하를 막기 위해 소형 정유사들이 현물시장에서 팔고도 남는 잉여물량을 조직적으로 사들인 사건이다. 소형 정유사들은 자체 저장시설이 없어 정유되는 즉시 시장에 석유를 내다 팔다보니 공급과잉상태가 초래되었다. 대형 정유사별로 소형 정유사와 짝(dancing partner)을 지어 각자의 공급과잉량을 사들였다. 직접적인 가격담합은 아니지만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고정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 담합의 목적이 경쟁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시키는데 있다고 보고 당연위법으로 처리하였다.

29) Broadcast Music Inc. v. CBS, 441 U.S. at 17 n.27(1979),

30) Oliver Black, Conceptual Foundations of Antitrust, Cambridge, 2005, p.71

31) U.S. v. Socony-Vacuum Oil Co.(310 U.S. 150, 1940)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책정된 가격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관련업체들이 비록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가격담합은 자유시장경제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시장지배력이 없는 기업이 가격담합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굳이 그런 것 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에 대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순 없을지 모르지만 시장경제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격메커니즘의 작동을 방해함으로써 시장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효과가 있으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 ②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n 사건<sup>32)</sup>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는 대학을 회원으로 하여 각종 스포츠를 관리하는 단체인데, 미식축구 수입의 확보를 위해 TV 생방송이 경기장 관객수를 감소시킬 것을 우려해 1981년에 향후 4년간 대학미식축구 전체의 한 시즌 당 방송회수, 한 팀 당 방송회수, 방송종류별 방송료 등을 규정하는 규약을 만들었다. 동시에 ABC 및 CBS 방송과는 일정수의 방송을 배타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었다. 유력 미식축구팀을 보유하고 있는 두 개의 대학이 이러한 규약은 서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당해 규약은 가격과 수량을 제한하는 노골적인 수평적 제한으로서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약식의 합리성 원칙을 활용해 NCAA로 하여금 당해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NCAA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노골적 수평제한에서는 시장지배력이 위

---

32)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n v. Board of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Oklahoma(468 U.S. 85,1984)

법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관련시장은 대학미식축구의 TV 생방송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노골적인 수평적 협정에 대해 당연위법의 원칙에 따라 성급히 처리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실체적인 분석을 하되 전면적인 분석보다는 약식의 분석을 채용하여 협정참가자로 하여금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할 만큼의 경쟁촉진사유(즉, 정당화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서면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비록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공화당 레이건대통령(1981-1989)시절의 판결로서 시카고학파의 경제학 이론을 받아들여 당연위법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 경제분석을 시도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 ③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심사기준」

동 심사기준에서도 경성공동행위인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지배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문제되는 공동행위가 경성 공동행위로 분류되는 유형이라도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통합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추진되고, 효율성증대 효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관되는 경제적 통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연성공동행위의 경우는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공동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이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포함한다)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성 공동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당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연성 공동행위(공동생산, 공동연구·개발,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등)는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심사절차를 거쳐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한다.

### (3) 베트남 경쟁법상 합의금지 방식의 특징

그런데, 베트남 경쟁법에서 경쟁제한적 합의의 금지방식은 표면적으로는 이분법을 따르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의 방식과는 크게 상이하다.

우선, 베트남 경쟁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유형 중 전면적 금지를 규정한 제 6~8항은 일응 당연위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행위들은 전통적인 경쟁법적 견지에서 볼 때 당연위법형 합의와 합리성의 원칙에 따르는 합의가 혼재되어 있다. 예컨대, 가격합의나 물량합의, 시장분할은 전형적인 당연위법형 합의이다. 그런데, 베트남 경쟁법에서는 무조건적인 금지에서 제외하여 시장점유율을 살펴도록 하고 있다. 물론 당연위법형 합의라 하더라도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도록 할 수는 있으나 전통적인 2분법적 분류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전면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행위 유형 즉 제1항~제5항의 합의는 그 성격이 동일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라는 한 가지 변수만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관련시장에서 합산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을 가진 당사자에게 금지된다고 규정하여 지나치게 단순하고 경직되게 규정을 하고 있다. 합의의 부당성에 대한 분석은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하여야 한다. 즉, 베트남 경쟁법에서는 합의의 경쟁제한성 분석이 시장점유율만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분석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의하면,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요소는 공동행위 참여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의 정도이다.

관련시장에서 사업자들이 보다 큰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당해 공동행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증가한다.

둘째 요소는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의 정도이다. 즉 참여 사업자간 독자적 경쟁능력·경쟁동기의 감소수준, 당해 공동행위가 경성 공동행위를 조장할 가능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참여 사업자간 경쟁제한의 정도가 클수록 당해 공동행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증가한다.

끝으로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보유와 참여사업자간의 경쟁제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참여 사업자간 경쟁제한의 수준이 높더라도 참여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참여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동행위 참여사업자간에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당해 공동행위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감소한다.

#### 4. 경쟁제한 합의의 면제

##### (1) 면제 요건

베트남 경쟁법 제10조에서는 경쟁제한적 합의 금지의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쟁제한 합의금지는 비용감소 및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면제된다.

- i) 조직의 구조와 사업규모를 개선하거나 사업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
- ii)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재화와 용역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iii) 상품의 품질기준과 기술표준의 균일적인 적용을 촉진하는 것
- iv) 거래, 배송 및 지불조건을 통일하지만 가격이나 이와 가격결정요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
- v)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 vi) 세계 시장에서 베트남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 (2) 면제절차

### 가. 면제결정권자

면제를 결정하는 권한은 통상산업부 장관(The Minister of Trade)에게 있다(법 제25조 제1항). 통상산업부 장관은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면제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 서면으로 결정을 내린다.

### 나. 면제신청자

경쟁제한 합의나 경제력 집중에 참여할 의도를 가진 당사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6조). 경쟁제한 합의의 당사자는 면제신청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를 선정하는데, 대표의 선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법 제27조 제1항).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는 관련 당사자가 결정한다((법 제27조 제2항). 당사자는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법 제27조 제3항).

### 다. 면제신청서



경쟁제한 합의 면제 신청서는 다음으로 구성된다(법 제28조). 서류 제출자와 경쟁제한 합의의 당사자는 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 i) 경쟁청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
- ii) 경쟁제한 합의에 참여하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협회에 의해 경쟁제한 합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협회인가서 사본
- iii) 경쟁제한 합의에 참여하는 회사의 법에 따른 회계 법인이 증명하는 최근 2개년의 재무제표
- iv)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합의에 참여하는 회사의 시장 점유율에 관한 최근 2개년의 보고서
- v) 이 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면제를 충족함을 설명하는 보고서
- vi) 서면으로 된 경쟁제한 합의의 당사자가 정한 대표자의 권한 부여

#### 라. 면제신청서의 접수(법 제30조)

경쟁청은 면제신청서를 접수할 책임이 있고, 결정을 위해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면제신청서를 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경쟁청은 서면제출자에게 서류의 완전성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서류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쟁청은 보완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서류 제출자는 법에 따라 면제 신청서의 평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 마. 면제 신청서의 보완 요청(법 제31조)

경쟁청은 면제신청서 제출자에게 경쟁제한 합의를 이행한 의도와 불명확한 문제에 대한 추가의 설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거와 정보를 보충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다.

마. 관련 당사자의 정보 보완(법 제32조)

경쟁청은 경쟁제한 합의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된 단체와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경쟁청의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관련된 단체와 개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응답해야 한다.

사. 면제 신청의 철회(법 제33조)

면제 신청의 철회를 원하는 경우 서류 제출자는 경쟁청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 경쟁청은 이 경우 면제 신청서의 평가요금을 환불하지 아니 한다.

아. 결정발표의 시한(법 제34조)

통상산업부 장관은 완전한 면제 신청서를 받은 후 6일 이내에 i)당사자에 대한 면제 승인 또는 ii) 당사자에 대한 면제 불승인 중 하나를 발표해야 한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통상산업부 장관은 결정의 발표 시한을 각각 최대 30일 동안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결정 발표의 시한을 연장하는 경우, 경쟁청은 서류 제출자에게 기한 만료 3영업일 이전까지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

자. 면제 승인에 대한 결정(법 제35조)

면제 승인에 대한 결정은 아래의 세부 원칙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의 규정에 따라 면제승인에 대한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

I) 당해 행위를 하도록 허용된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ii) 허용된 행위의 세부사항

iii) 면제의 유효기간과 조건과 당사자의 의무

차. 면제된 사안에서 경쟁제한 합의의 이행(법 제36조)

면제된 사안의 경쟁제한 합의의 당사자는 통상산업부 장관의 면제승인 결정이 있는 후에 경쟁 제한 협정을 이행할 수 있다.

카. 면제승인 결정에 대한 취소(법 제37조)

면제 승인 결정을 발표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면제 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면제 승인 결정은 아래의 경우에 취소된다.

i) 면제 신청에 기만을 발견했을 때

ii) 면제승인 사업자가 면제 승인 결정에 명시된 기간 중 조건과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iii) 면제를 위한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타. 면제 승인에 관련된 결정에 대한 소송 제기(법 제38조)

면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이나 면제 승인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사업자는 고소와 고발에 관한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Ⅲ. 시장지배적지위 및 독점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 1. 개요

경쟁법은 독점을 규제하는 법으로 출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카르텔 규제는 둘 이상의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독점을 형성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시장지배적지위의 규제는 단독의 기업이 독점력을 남용하거나 소수의 기업이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동조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지배력의 보유 혹은 독점력의 보유 그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일찍이 1930년대 미국의 Alcoa 판결에서 시장지배력의 보유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Size does not determine guilt")라고 판시한 바 있듯이 베트남에서도 시장지배력의 보유 그 자체를 불법화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남용만을 금지한다. 여기에는 면제가 허용되지도 않는다.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를 살펴보면 독점력이나 시장지배력의 개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2. 시장지배적지위 및 독점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

### (1) 이원적 유형

외국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미국은 경쟁제한성을 핵심으로 일원적인 규제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 EU나 일본, 우리나라는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이원적인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배제행위든 지배행위든 경쟁제한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원적이라고 하기도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베트남 경쟁법도 EU나 일본,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원적인 유형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시장지배적지위 규제체계는 우리나라나 EU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반드시 경쟁제한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EU나 우리나라의 착취남용행위는 경쟁제한성을 요구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이나 소비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U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그 자체로서 공정성의 관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역내 시장통합을 저해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EU 경쟁법도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배제남용행위는 미국의 경쟁제한적 행위와 유사하지만 착취남용행위는 미국에서는 연방차원의 경쟁법에서는 규제하지 않는 행위유형이다. 물론 이러한 법집행은 경쟁법 본연의 모습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오기도 하였지만, EU Commission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더 엄격한 행위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표 7>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규제체계 비교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베트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	경쟁제한행위	배제남용행위	배제행위	배제남용행위	배제남용행위
		착취남용행위	지배행위	착취남용행위	착취남용행위

다만, 유럽국가들이 가격남용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국내법적인 근거도 별도로 있고 실제로 가격남용행위를 규제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다지 흔하

게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도 대단히 엄격한 조건하에 대단히 힘들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범위에 있어서도 Richard Whish 교수의 지적대로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는 통신이나 전기와 같이 종래 국가소유의 독점기업이 운영하다 민영화되었지만 아직까지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규제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착취남용행위 규제는 경쟁규제당국으로 하여금 독과점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규제를 가능하게 해 주는 장점이 있어 독점규제법을 늦게 도입하면서 시장에서 경쟁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 (2) 평가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지금도 공산주의이다. 하지만, 경제면에서는 시장주의 원리를 대폭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경쟁법의 집행초기부터 경쟁만을 염두에 두고 법을 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제정 및 변천사를 살펴보다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의 출발은 착취남용행위였다. 이후 시장경제가 성숙되면서 배제남용행위 규제로 중심축이 이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에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종래의 사전규제방식의 경제운용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사후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독과점사업자(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사후의 가격이나 출고조절 등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었다.<sup>33)</sup> 그 후 1999년 제7차 개정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 및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에 시장지배적지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33) 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10년(경쟁정책의 운용성과와 과제)」, 1991, 39~42면 참조.

이러한 입법연혁에서 알 수 있듯이 착취남용규제인 가격남용행위 및 출고조절행위에 대한 규제는 행위의 성격도 그러하거니와 당초부터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물가통제를 통한 소비자보호의 측면이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1년 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이 발간한 「공정거래10년」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누어 가격남용행위와 기타의 남용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은 가격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남용행위의 대종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초기의 공정거래법 집행에서 물가안정이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도 다른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1990년대 후반 들어서는 시장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되고 경쟁기반이 조성되면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 착취남용규제보다는 배제남용규제 쪽으로 중심축이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느 국가든 자국 산업의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산업구조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시장구조 개선노력이나 행태규제를 하게 된다. 예컨대, 착취남용규제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통신 산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민간에 의해 발전되었고 경쟁 하에 놓여 있었던 미국과 달리 일정 기간 국가독점 하에 있다가 나중에 자유화(liberalization)·민영화(privatization)된 유럽의 경우 통신 산업을 자유화·민영화 하면서도 소비자와 거래상대방의 이익보호를 위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산업들이 국가주도 하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차관공여나 국가보조금 지급, 각종의 인허가제로 인한 진입장벽의 형성 등으로 인

해 초기에는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 경제운용기조를 민간위주·사후규제 쪽으로 선회한 이후에도 좁은 국토 내에서 주요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미국식의 경쟁제한행위 규제만으로는 시장의 질서를 공정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쟁법의 이러한 발전사는 베트남의 경쟁법 집행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베트남은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3.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및 독점적지위 사업자의 추정 및 남용행위의 금지

#### (1)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및 독점적지위 사업자의 정의

법 제11조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단독의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사업자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 가. 단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단독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관련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30%이상이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추정조항이 단독의 사업자인 경우 시장점유율 50%이상을 요구하는 것<sup>34)</sup>과 비교

34) 공정거래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정의)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하여서도 그렇고, 미국이나 EU, 일본 등과 비교할 때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범위를 대단히 넓게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 ① 미국과 비교

미국의 경우는 Sherman 법 제2조에서 “독점하거나 독점을 기도하거나 독점하기 위해...결합하는 자”(Every person who shall monopolize or attempt to monopolize or combine or conspire...to monopolize)를 규제한다. 미국에서는 ‘독점력’(monopoly power)이라는 단어와 ‘시장에서의 힘’(market power)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일단 구분해 본다면 ‘시장에서의 힘’(market power)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미하고 그 힘이 크든지 작든지 문제 삼지 않는다. 반면 ‘독점력’(monopoly power)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을 의미한다.

어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힘’(market power)은 경쟁시장에서는 약해지는 반면 독과점시장에서는 강해진다. 예컨대, 완전경쟁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힘’(market power)은 제로상태인 반면 경쟁이 약화되는 단계로 옮겨가면서 커지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위 ‘Cellophane Case’에서 독점력을 “관련시장에서 가격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힘”<sup>35)</sup>으로 정의하였는데, 그러한 힘은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 기간 동안 높은 이윤을 누리게 하여 주는 힘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독점력은 완전경쟁에서 순수독점(pure monopoly)으로 옮겨가는 스펙트럼의 어느 지점에서 특정 기업의 ‘시장에서의 힘’(market power)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35) “the power to control prices or exclude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U.S. v. E.I.duPont, 351 U.S. 377(1956).

실무적으로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힘’(market power)이 ‘독점력’(monopoly power)에 상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Alcoa 판결<sup>36)</sup>에서 90% 이상이면 충분하고 60% 혹은 64%는 의심스러우며 33%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된 적이 있다. Grinnell 판결<sup>37)</sup>에서는 85%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판시된 적이 있다. 미국에서의 판례들을 본다면 대체로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면 독점력을 추정하기에 충분하고, 50% 이하이면 독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가운데 부분이 회색지역으로 남는다.<sup>38)</sup>

## ② EU와 비교

EU의 시장지배력의 개념은 미국에서의 독점력(monopoly power)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 보면 시장지배력의 판단이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U에서도 시장지배적지위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시장점유율인데, 유럽법원(ECJ)은 AKZO사건에서 시장점유율이 50%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장지배적지위가 추정된다고 판결하였다.<sup>39)</sup> 그래서, 사업자가 스스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나아가 유럽법원은 United Brands 사건에서 시장점유율 40%~45%인 경우도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결하였다.<sup>40)</sup> Virgin/British Airways 사건에서 39.7%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결정되었다.

물론 개별 사건마다 다양한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본다면 EU Commission이

36) U.S. v. Aluminum Co. of America, 148 F.2d 416(2nd Cir. 1945).

37) U.S. v. Grinnell Corp., 384 U.S. 563(1966).

38) ABA Section of Antitrust, Antitrust Law Developments(fourth), Vol.I, pp.235-236.

39) Case c-62/86 [1991] ECR I-3359, [1993] 5 CMLR 215.

40) Case 27/76 [1978] ECR 207, 1978 1 CMLR 429.

나 유럽법원은 미국의 경쟁당국이나 법원에 비해 시장지배적지위의 인정에 있어서 덜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sup>41)</sup>

### ③ 일본과 비교

일본 獨禁法 제2조 제5항에서 私的獨占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私的獨占이란 사업자가 단독 혹은 타사업자와 결합 혹은 공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거나 지배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해석상 私的獨占은 시장지배적지위가 있는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반면 불공정거래는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더라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가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법 적용을 위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sup>42)</sup> 시장지배력이 인정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1957년 동경고등재판소의 野田醬油 판결<sup>43)</sup>에서는 36.7%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도 시장지배적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sup>44)</sup>

일본에서는 私的獨占의 결과 시장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私的獨占금지 는 시장지배력을 반드시 요구하는 EU 경쟁법보다는 적용범위가 넓고 오히려 미국과 유사하다고 보기도 한다.

#### 나. 공동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41) 瀧川敏明, 日米EUの獨禁法と競争政策, 青林書院, 1996, 233-234면.

42) 상계서, 219면.

43) 東京高裁 昭和 32년12월25일, 高裁民集10卷12号 743면.

44) 伊從寛·矢部丈太郎 편, 實務解説 獨禁法 Q&A, 青林書院, 2007, 69면.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공동으로 행동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두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일 것
- 세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합계가 65% 이상일 것
- 네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것

### ① 미국과 비교

미국의 경우 과점시장에서 합의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반경쟁적인 결과가 초래된 경우 공유독점(shared monopoly) 이론에 의해 제재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었다. FTC는 과점시장에서 가격선도기업과 이를 추종하는 기업들간 가격동조화 현상에 대해 공유독점이론에 의해 FTC 법 제5조를 적용하였으나 항소법원에서 패소하였다[729 F. 2d 128(1984)]. 항소법원은 그러한 행위를 위법화하게 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논거 중 하나로 들었다.

### ② EU와 비교

EU의 경우도 조약 제82조에서 공동지배(collective dominance) 이론의 여지를 열어 두고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독점규제는 단독규제로 이해되어 왔고 복수기업에 의한 독점규제는 EC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C에서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공동지배로 보고자 한 시도가 있었고 EU Commission은 통신분야의 SMP사업자의 인정기준에서 공동지배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 ③ 우리나라와 비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2조 7호 1문에서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여러 사업자들이 집단으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까지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sup>45)</sup>

#### 다.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

법 제12조에서, 사업자는 관련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에서 경쟁하는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EU, 일본, 우리나라 등 많은 국가들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 <심결례 : 항공유 거래거절 사건>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2009년 Vinapco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이다. 항공유 공급업체인 Vinapco는 국영기업인 Vietnam Airlines의 자회사인데, 2008.4.1. Jetstar Pacific Airlines에게 연료공급을 중단하였다. 공급중단은 양측이 가격인상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Jetstar Pacific Airlines는 약 5,000여명의 승객을 수송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시 공급을 재개하기는 하였으나 Jetstar Pacific Airlines는 베트남 경쟁청에 신고를 하였다.

베트남 경쟁위원회는 2009년 Vinapco가 정당한 이유없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결정하고 과징금 34억동을 부과하였다. Vinapco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1년 인민법원은 베트남 경쟁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45) 이 판결은 공동의 시장지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판결로 이해되고 있다. 권오승, 「경제법」, 제6판, 법문사, 2008, 145쪽.

#### 4. 국가 독점사업 및 공공역무 제공사업자의 통제

법 제15조에서는 국가가 다음의 방법으로 국가 독점사업의 사업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가 독점하는 영역에서 재화와 용역의 구매와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 둘째는, 국가가 독점하는 영역에서 재화와 용역의 수량과 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명령이나 계획, 정부가 규정하는 가격과 수수료에 따른 입찰시행 등의 방법으로 공공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통제할 수 있다. 단, 국가가 독점하는 영역이나 공공역무가 아닌 다른 사업 활동에 착수할 때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지위 및 독점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규제는 대부분의 선진국 경쟁법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 IV. 경제력집중의 규제

#### 1. 개요

베트남 경쟁법에서 경제력집중의 규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제와 같은 일반집중의 규제가 아니라 기업결합의 규제를 의미한다. 경쟁제한적 합의나 시장지배력의 남용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일단 이루어진 이후에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철저한 경쟁제한성 심사가 요청이 된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 2. 경제력 집중의 유형

법 제16~17조에서는 경제력 집중의 유형과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흡수합병

사업자의 흡수합병(Merger)은 하나 또는 다수의 사업자가 모든 자산, 권리, 의무, 이익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합병하는 회사는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신설합병

사업자의 신설합병(Consolidation)은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기 위해 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가 모든 재산, 권리, 의무, 정당한 이익을 이전하고 결합하는 사업자는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영업양수

사업자의 영업양수(Acquisition)는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사업자의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사업자간의 합작투자

사업자간의 합작투자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설회사의 설립에 자산, 권리, 의무, 법률상 이익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5) 기타 법률에 규정된 경제력 집중

위의 유형들 외에 기타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 3. 경쟁제한적 경제력집중의 금지

경제력 집중은 이 법 제19조(금지되는 경제력 집중으로부터 면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나 경제력 집중을 실시한 후에도 이 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력 집중에 참여한 사업자의 관련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을 접하면 금지된다(법 제18조). 시장점유율이 30% 이하는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은 30%~50% 사이에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방식의 규제는 상당히 독특하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여 규제하는데 반하여 베트남에서는 중소기업여부 혹은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확일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마치 일정한 기준에 속하는 기업결합은 당연위법(per se illegal)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기업으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점유율만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마 경쟁법 집행초기단계에서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 및 역량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확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4. 금지되는 경제력 집중으로부터 면제



법 제19조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면제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제력 집중 참여자가 해산이나 파산할 위험이 있을 때

이것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 사유 중 부실기업(failing firm)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경제력 집중이 수출을 확장하거나 사회·경제적인 개발 그리고/또는 과학기술상의 진보에 기여한 때

이것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 사유 중 효율성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과 수출 혹은 사회개발, 과학기술상의 진보를 연계시키는 것은 해외에서는 보기 힘든 사례이다. 효율성 예외는 통상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식의 독특한 예외라 할 수 있다.

## 5. 경제력 집중의 신고

법 제20조에서는 경제력 집중의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신고대상자

i) 경제력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30%에서 50%인 경우 법적인 대표자가 경제력 집중을 실시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ii) 경제력 집중에 참여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관련 시장에서 30% 이하이고, 경제력 집중을 실시한 후에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iii) 이 법 제19조에 규정된 면제의 자격을 가진 경제력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경제력 집중 신고 대신에 이 장 제4절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경제력 집중 신고서

경제력 집중 신고서는 아래로 구성된다(법 제21조). 경제력 집중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서류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i) 경제력 집중의 서면 신고는 행정기관에 정해진 형식에 따른다.

ii) 경제력 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사업등록 증명서의 유효한 사본

iii) 경제력 집중에 참여하는 각각의 회사는 법률 규정에 따른 회계 법인의 증명을 받은 최근 2개년의 재무제표

iv) 경제력 집중에 참여하는 각의 사업자의 계열회사 목록

v) 경제력 집중에 참여하는 각각의 회사와 계열회사가 거래하는 재화와 용역의 목록

vi) 경제력 집중에 참여하는 각각의 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최근 2개년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보고서

## (3) 신고처리 절차

i) 경제력 집중 신고서의 수령

경쟁청은 경제력 집중 신고서를 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신고서의 적법성

과 완전성을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서류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쟁청은 보충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법 제22조).

## ii) 경제력 집중 신고서 처리기한

경쟁청은 경제력 집중 신고서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응답해야 한다. 동 행정기관은 서면답변 시 경제력 집중이 금지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한다(법 제23조). 당해 경제력 집중이 법 제18조에서 금지되는 경우 금지 이유가 서면답변에 분명히 적혀야 한다.

당해 경제력 집중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장은 처리기한을 각각 30일로 2번까지 연장할 수 있고, 처리기한 만료 3영업일 전에 연장 이유를 명시하여 서류 제출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iii) 경제력 집중의 이행

경제력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법적인 대표자는 행정기관이 경제력 집중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응답한 후에 법에서 정한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서 경제력 집중 절차를 이행한다(법 제24조).

## 6. 경제력 집중의 면제

### (1) 면제결정권자

통상산업부 장관은 서면으로 제19조 제1항(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제력 집

중 참여자가 해산이나 파산할 위험이 있을 때)에서 규정한 면제에 대해 결정한다. 국무총리는 서면으로 이 법 제19조 제2항(경제력 집중이 수출을 확장하거나 사회·경제적인 개발 그리고/또는 과학 기술상의 진보에 기여한 때)에 규정한 면제에 대해 결정한다.

## (2) 면제신청자

경제력 집중에 참여할 의도를 가진 당사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6조). 당사자는 면제신청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를 선정하는데, 대표의 선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법 제27조 제1항).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는 관련 당사자가 결정한다(법 제27조 제2항). 당사자는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법 제27조 제3항).

## (3) 면제신청서

경제력 집중 면제에 대한 신청서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i) 경쟁청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
- ii) 경제력 집중에 참여한 회사 사업자 등록증의 유효한 사본
- iii) 경제력 집중에 참가하는 회사의 법에 따른 회계 법인이 증명하는 최근 2개년의 재무제표
- iv) 관련 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에 참여하는 회사의 시장 점유율에 관한 최근 2개년의 보고서
- v) 이 법 제19조에 규정한 면제의 경우를 충족하는 보고서
- vi) 경제력 집중 당사자가 정한 대표자의 서면으로 된 권한 부여

## (4) 면제신청서의 접수(법 제30조)

경쟁청은 면제신청서를 접수할 책임이 있고, 결정을 위해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면제신청서를 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경쟁청은 서면제출자에게 서류의 완전성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서류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쟁청은 보완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서류 제출자는 법에 따라 면제 신청서의 평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 (5) 면제 신청서의 보완 요청(법 제31조)

경쟁청은 면제신청서 제출자에게 경제력집중을 이행한 의도와 불명확한 문제에 대한 추가의 설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거와 정보를 보충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다.

#### (6) 관련 당사자의 정보 보완(법 제32조)

경쟁청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된 단체와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경쟁청의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관련된 단체와 개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응답해야 한다.

#### (7) 면제 신청의 철회(법 제33조)

면제 신청의 철회를 원하는 경우 서류 제출자는 경쟁청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 경쟁청은 이 경우 면제 신청서의 평가요금을 환불하지 아니 한다.

#### (8) 결정발표의 시한(법 제34조)

통상산업부 장관은 완전한 면제 신청서를 받은 후 6일 이내에 i)당사자에

대한 면제 승인 또는 ii) 당사자에 대한 면제 불승인 중 하나를 발표해야 한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통상산업부 장관은 결정의 발표 시한을 각각 최대 30일 동안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무총리의 면제 승인권의 관할에 속하는 경제력 집중의 경우, 면제의 승인과 불승인 결정의 발표에 대한 기한은 완전한 신청서를 받은 후로부터 90일이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기한은 80일에서 100일 이다. 결정 발표의 시한을 연장하는 경우, 경쟁청은 서류 제출자에게 기한 만료 3영업일 이전까지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

#### (9) 면제 승인에 대한 결정(법 제35조)

면제 승인에 대한 결정은 아래의 세부 원칙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의 규정에 따라 면제승인에 대한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

- i) 당해 행위를 하도록 허용된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 ii) 허용된 행위의 세부사항
- iii) 면제의 유효기간과 조건과 당사자의 의무

#### (10) 면제된 사안에서 경쟁제한 합의의 이행(법 제36조)

면제가 허용된 경제력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법률상 대표자는 면제의 승인에 대한 결정이 국무총리나 통상산업 장관에 의해 내려진 이후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11) 면제승인 결정에 대한 취소(법 제37조)

면제 승인 결정을 발표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면제 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면제 승인 결정은 아래의 경우에 취소된다.

- i) 면제 신청에 기만을 발견했을 때
- ii) 면제승인 사업자가 면제 승인 결정에 명시된 기간 중 조건과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 iii) 면제를 위한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 (12) 면제 승인에 관련된 결정에 대한 소송 제기(법 제38조)

면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이나 면제 승인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사업자는 고소와 고발에 관한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V. 불공정행위의 규제

### 1. 개요

불공정행위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산업구조가 선진화되어 있지 않고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많은 나라들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전형적인 경쟁법 사건 외에 경쟁방법이 부당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기만성이 있는 거래 전반에 대해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다단계판매를 경쟁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독특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의 입법연혁을 살

펴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조에서 유래한 것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셔먼법 등의 독점금지법과 기타의 소비자보호법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독립적 행정규제위원회로서 연방거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1914년 제정되었는데, 동법 제5조는 당초에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만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방거래위원회는 동 조항을 근거로 셔먼법 등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쟁제한행위 이외에 반드시 경쟁제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다양한 기만적인(deceptive) 영업행위도 경쟁자를 부당하게 경쟁상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는 이유로 동 조항의 규율대상에 포함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법집행을 하였고, 실제로 초기 각급 연방법원의 판결에서도 대체로 그와 같은 법해석을 승인하였다.

그 후 연방대법원은 *FTC v. Raladam Co.*, 283 U.S. 643 (1931) 판결에서<sup>46)</sup>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adverse impact on competition)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입증되지 않는 기만적인 행위 등은 위 조항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1938년 연방의회는 *Raladam* 판결에서 나타난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좁은 해석을 입법적으로 파기하기 위해 *Wheeler-Lea* 개정법안을 통과시켜서 위 조항의 금지대상에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거래관행”(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을 포함시켰고, 그 후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는 반드시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

46) 동 사건에서 *Raladam* 사는 자사가 판매하는 비만치료제를 광고하면서 그것이 인체에 위험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아무런 위험이 없는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지명령을 받았다.



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폭넓게 적용되어 왔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1947년 동법 제정 당시 법 제19조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계수하여 “불공정한 경쟁방법”이라는 제목 아래(1963년 개정을 통하여 제목을 “불공정한 거래방법”이라고 변경) 차별적 취급, 부당 판매, 부당 고객유인,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의 지위 남용 및 경쟁회사 내부교란행위 등 6개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열거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상과 같은 일본 독점금지법의 예에 따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 2. 유형

법 제39조에서 제48조에 걸쳐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행위의 내용은 대만의 경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sup>47)</sup>

### (1) 오인성 있는 표시

47) 대만경쟁법에서는 불공정경쟁행위로 다음의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18조)
- (2) 공정경쟁의 저해(제19조)
- (3) 다른 상품, 서비스라고 오인시키는 행위(제20조)
- (4) 부당표시(제21조)
- (5) 다른 사업자의 신용을 해치는 허위 정보의 유포(제22조)
- (6) 다단계판매(제23조)
- (7) 기만적 또는 명백히 불공정한 행위(제24조)

사업자는 경쟁의 목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소비자에게 오인시킬 목적으로 상표명, 사업상 구호, 회사 상징, 포장, 지리적 표시와 정부가 정한 다른 요소들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를 포함하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러한 오인성 있는 정보를 사용한 재화와 용역으로 영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미국 FTC법 제5조에서는 당초에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만을 금지하였는데, 1938년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heeler-Lea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서 위 조항에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거래관행”(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을 포함시켰다. 오인성 있는 표시의 규제는 Wheeler-Lea 개정 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의 유형으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sup>48)</sup>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999. 2. 5에 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 (2) 영업상 비밀 침해

영업상 비밀의 침해를 경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경쟁법집행방식이라 할 수 있다. 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영업상 비밀의 법률상 소유자가 취한 보안조치를 회피하여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에 접근하고 수행하는 것
- ii) 영업상 비밀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
- iii) 보안 계약을 위반하거나 영업상 비밀 소유자의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정

---

48) 제23조 제1항 제6호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보에 접근, 수집, 공개하기 위하여 보안의무를 가지는 사람의 신용을 활용하거나 속이는 것

- iv) 국가기관이 정한 보안조치를 회피하여 영업에 관한 법에 따른 절차, 상품 유통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거나, 영업이나 상품 유통에 관련된 면허의 신청이나 사업목적을 위해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

### (3) 사업에서의 강요

법 제42조에서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그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협을 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거래강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강제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 (4) 다른 사업자의 명예훼손

법 제43조에서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명성, 재정상황,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허위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사업활동방해 중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와 유사하다. 기타의 사업 활동방해는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이전방해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사업활동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예시로서, 경쟁사업

자의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경쟁사업자의 도산이 우려된다든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의 해지 및 판매량감소 등을 야기하는 행위나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전단을 살포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 (5)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법 제 44조에서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적법한 사업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사업활동방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 (6) 불공정한 경쟁을 위한 광고

법 제45조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을 위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첫째, 다른 사업자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비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비교광고를 금지한 것인데 참고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비교광고를 금지하였다가 지금은 허용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해 다른 광고제품을 모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허위 또는 오인성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i) 가격, 양, 품질, 시설, 디자인, 카테고리, 포장, 제조일, 사용기간, 원산지, 제조업자, 제조 장소, 가공업자, 가공 장소

ii) 사용법, 서비스 방법, 보증 기간 iii) 기타 허위나 오인성 있는 정보

넷째,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되는 다른 광고가 금지된다.

#### (7) 불공정한 경쟁을 위한 판촉활동

법 제46조에서는 사업자는 다음의 판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i) 경품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판촉
- ii)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재화와 용역에 대한 허위나 오인성 있는 판촉
- iii) 동일한 판매 홍보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고객을 차별하는 것
- iv) 시험 사용을 위해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고객이 그 상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가 생산하여 현재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비슷한 상품의 교환을 요구하는 것
- v) 법에 의해 금지된 다른 판촉

#### (8) 협회에 의한 차별

법 제47조에서 협회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유사하다.

- i) 가입자격이 있는 사업자나 조직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탈퇴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나 조직에 대해 탈퇴하는 것을 거부하여 차별적 취급을 하고 경쟁상 불리하게 하는 행위

- ii) 구성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비합리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업목적과 관련된 다른 활동을 비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

### (9) 위법한 다단계 판매

경쟁법에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것도 베트남 경쟁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법 제48조에서 사업자는 다단계 판매 조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sup>49)</sup>를 내리고 동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 i)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다단계 판매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예치금이나 최초에 정해진 재화를 구매하게 하거나 일정액의 금전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
- ii) 참여자에게 재판매를 위한 상품을 판매할 때, 최소한 90%이상의 가격으로 환매하는 것을 약속하지 않는 것

---

#### 4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iii) 다른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조직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참여자가 수수료, 상여금, 기타 경제적 경제적인 이익을 얻도록 허용해 주는 것

iv) 다단계 판매 조직에 참여하면 얻게 되는 이익이나 상품의 특징과 효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

(10) 기타 이 법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타 불공정한 행위

## 제4장 베트남 경쟁법의 집행체제 및 절차

### I. 집행기관

#### 1. 경쟁청(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 (1) 소속 및 법적 지위

경쟁청은 독립된 부서가 아니라 통상무역부 소속기관으로서 경쟁뿐만 아니라 반덤핑, 보조금, 베트남 수입품에 대한 방어조치 등에 있어서 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영어 약자로는 'VCA'로 표기한다. 경쟁청은 하노이 시에 본부가 있고 지방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 (2) 책임과 권한

경쟁청은 베트남의 경쟁정책 및 집행의 주무기관으로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경쟁, 반덤핑, 보조금, 베트남 수입품에 대한 방어 조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집행을 담당한다.
- 경쟁청이 관할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률적 서류, 계획승인 등의 검토, 평가, 종합 업무를 담당한다.



- 경쟁, 반덤핑, 보조금, 베트남 수입품에 대한 방어조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 조사하도록 요청한다.
-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① 일정한 경쟁법 사건을 처리하여 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uncil)가 담당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② 불건전한 경쟁 행위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 ③ 법에 정한 면제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평가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④ 경제력 집중 절차를 감독하는 것 ⑤ 시장지배적 사업자, 독점기업, 협회에 적용되는 경쟁원칙, 면제사안 등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 시정조치 및 제재를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경쟁, 반덤핑, 보조금, 베트남 수입품에 대한 방어조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입법과 정책을 준비하고 교육하며 홍보한다.

### (3) 조직

#### 가. 청장(Director General) 및 부청장(Deputy Director General)

경쟁청의 청장은 통상산업부 장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는데, 베트남 경쟁청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청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임명하는 데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두고 있다.

#### 나. 국장

6개의 사건국을 두고 있는데, 경쟁정책국(Competition Policy Board), 반독

점조사국 (Antitrust Investigation Board), 불공정거래조사국(Unfair Competition Investigation Board), 소비자보호국(Consumer Protection Board),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 Board), 거래개선국(Trade Remedies Board)을 두고 있다.

각 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통상산업부 직원 중에서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명한다.

#### 다. 지역사무소

다낭과 호치민시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지역사무소 소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 2.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

### (1) 소속 및 법적 지위

베트남 경쟁위원회(Vietnam Competition Council, VCC)는 통상산업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경쟁사건의 심의를 담당하는데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없지만 업무에서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다.<sup>50)</sup>

### (2) 책임 및 권한

경쟁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

50) 경쟁위원회 설립, 기능, 책임, 권한, 조직구조에 관한 령( 제1조

- 경쟁사건(경쟁제한적 합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독점적 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의 처리
-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게 될 위원회 구성
- 관련조직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사건관련 정보 요청
- 시정조치의 결정, 변경, 취소 등
- 기타 법에 정한 임무

### (3) 조직

경쟁위원회는 11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하고 통상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해임한다. 위원의 요건은 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다. i)도덕성, 정직성, 공평성, 사회주의의 정당성 보호자격소유자 ii)법학, 경제학, 금융학 학사 소지자 iii)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자 iv)임무수행능력 보유자이다.

의장은 통상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선임한다. 의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고 재임용될 수 있다. 현재 임명된 위원들의 소속을 보면 외부의 독립된 인사들보다는 주로 통상산업부 소속 공무원이거나 다른 부처 소속의 공무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4) 경쟁사건처리위원회

경쟁위원회 의장은 구체적인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최소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쟁사건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중의 한명이 특정사건심의의 위원장이 된다. 사건의 최종결정은 비밀투표 후 다수결에 의하는데 만약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포함된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된다(법 제80조).

특징은 상설된 위원회가 아니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경쟁사건처리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수의 전문성 있는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전문성의 견지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경쟁사건처리위원회는 경쟁청의 조사와 달리 심의기간의 제한이 없다.

경쟁사건처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선임이 통상산업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총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상 독립성의 확보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선진 경쟁당국과의 비교

<표 8> 주요 경쟁당국 비교

구분	미국 FTC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EC 위원회	베트남 경쟁위원회
선임시 의회의 간여여부	간여	간여	간여	미간여
독립기관 여부	독립기관	독립기관	독립기관	미 독립기관
위원의 수	5인	5인	27인	11~15인
위원의 임기	7년	5년	5년	5년
임기의 시차제	채택	비채택	비채택	비채택
비상임위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위원의 선임자격	법에서 미규정	법에서 규정	조약에서 규정	법에서 규정
위원의 해임 등	법정 사유	법정 사유	조약규정 사유	법에서 미규정
위원의 독립성	법에서 미규정	법에서 규정	조약에서 규정	법에서 규정

## II. 집행절차

### 1. 일반원칙(법 제56조)

경쟁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경쟁법뿐만 아니라 행정사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쟁청의 청장 및 경쟁위원회의 위원들은 각각의 법적 권한과 책임 내에서 기업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하고 관련 기업이나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 2. 사건의 단서

사건의 단서는 신고(complaint)와 직권인지이다.

조직체나 개인이 경쟁법위반행위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경쟁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기한은 관련 위반행위가 행해진 날로부터 2년 이내이다. 신고 시 정해진 양식의 서면신고서와 위반행위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인은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신고서류가 제출되면 경쟁청은 7영업일 이내에 신고 서류의 수령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해 주어야 한다.

경쟁청에 의한 사건의 직권인지도 가능한데 이 경우도 관련 위반행위가 행해진 날로부터 2년 이내이다.

### 3. 사건의 조사

사건의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진행된다.

### (1) 예비조사

사건의 예비조사는 경쟁청장이 경쟁사건의 신고서류를 접수한 후 범위반행위를 발견한 후 개시된다. 예비조사의 기한은 예비조사 결정이 내려진 이후 30일이다. 조사관들은 예비조사를 마친 후 사건의 종결 또는 본조사의 시작에 대해 경쟁청장에게 건의를 하여야 한다. 건의를 받은 경쟁청장은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범위반행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리고, 범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본조사를 시작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 (2) 본조사(Official Investigation)

#### 가. 조사의 내용

경쟁제한적 합의, 시장지배력 혹은 독점력 남용, 경제력집중과 불공정거래 사건은 조사의 내용이 상이하다. 법 자체에서 사건의 성격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쟁제한적 합의, 시장지배력 혹은 독점력 남용, 경제력집중의 경우 본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시장획정, 관련시장에서 피조사인의 시장점유율,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및 분석이다.

불공정거래 사건에서는 조사관은 피조사인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 나. 조사의 기한

베트남 경쟁법에서는 사건의 조사기한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쟁위원회의 심의에는 기한이 없다.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본조사의 기한은 본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이다. 필요한 경우 이 기한은 경쟁청장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쟁제한적 합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 사건의 경우 조사기한은 본조사 결정일로부터 180일이다. 필요한 경우 이 기한은 경쟁청장이 60일까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사기간의 연장은 조사기간 만료 7영업일 이전까지 관련 당사자들에게 조사관이 통보한다.

## 다. 조사권한

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관련 조직이나 개인, 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
- 경쟁청 청장이 감정인을 요청하도록 건의하는 것
- 경쟁청장이 잠정적인 조치(administrative preventive measures)를 취하도록 건의하는 것

## 라. 조사조서의 작성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관들은 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조사기일 및 장소, 조사관, 피조사인, 조사내용, 피조사인의 고충제기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조사조서는 피조사인에게 조사관이 낭독해 주어야 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피조사인이 조사조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관은 그에 대한 이유와 함께 그러한 사실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 마. 증인출두 요청

조사과정에서 관련당사자는 경쟁청이 증인출두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자는 경쟁청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증인출두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경쟁청은 증인의 이름과 주소, 증언장소와 일시, 관련 당사자와 주제를 명확히 알려 주어야 한다. 증언은 조사관이 조서에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전 증인에게 낭독해 주어야 한다.

#### 바. 조사보고서

조사종료 후 경쟁청장은 경쟁제한행위와 관련된 사안은 조사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경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에는 사건의 간략한 설명, 입증된 증거, 시정조치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형사적인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관은 경쟁청장이 검찰에 당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즉각 건의하여야 한다. 검찰이 범위반사안이 없다고 판단하면 다시 경쟁청에 서류를 반환하여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쟁위원회가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관은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야 하고 지방정부나 경찰 등 관련 행정기관은 경쟁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협조해 주어야 한다.

## 4. 사건의 심의

경쟁위원회는 심의를 통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 (1) 결정의 유형

경쟁위원회 의장은 조사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후 경쟁사건처리위원회(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쟁사건처리위원회는 관련 서류를 수령한지 3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 가. 심의개최

세부적인 내용은 후술한다.

#### 나. 추가조사

제출된 서류와 증거만으로는 범위반 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추가조사 결정을 내리고 조사관에게 서류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

#### 다. 사건종결

사건종결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쟁청장이 범위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건의하고 경쟁사건처리위원회가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
- 피조사인이 자발적으로 범위반행위를 중지하고 범위반상태를 시정하였으며 신고인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철회한 경우

- 피조사인이 자발적으로 범위반행위를 중지하고 범위반상태를 시정하였으며 경쟁청이 직권 인지한 사안에서 경쟁청이 사건종결을 건의한 경우

## (2) 심의의 개최

### ① 개최통지

심의개최 결정을 하는 경우는 결정 15일 이내 경쟁사건처리위원회는 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심의개최 결정이 내려지면 최소한 심의개최 10일 이전까지는 당사자들에게 결정을 통지해 주어야 하고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법 제102조, 제103조).

결정통지시에는 피조사인, 신고인 또는 직권인지의 경우 경쟁청, 범위반조항, 심의일자 및 장소, 공개심의인지 비공개심의인지 여부, 경쟁사건처리위원회 명의, 조사관의 성명, 대리인의 성명, 통역사의 성명, 증인의 성명, 전문가의 성명, 이해관계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심의

심의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심의내용이 국가기밀이나 사업상의 비밀과 관련된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심의참여자는 경쟁사건처리위원회 위원, 피조사인, 신고인, 대리인, 조사관 등이다.

### ③ 결정

경쟁사건처리위원회는 양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결정문에는 사건의 간략한 설명, 사건분석, 결론을 포함하여야 하고 위원장

이 서명한 후 7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이 결정은 서명 일로부터 30일이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30일 후 발효한다(법 제 106조).

## 5. 이의신청

관련 당사자들이 경쟁사건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 경쟁위원회에 의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경쟁청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결정의 집행은 정지된다.

이의제기를 받은 경쟁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불법인 경우 결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경쟁사건처리위원회 구성이 법률에 반하거나 절차상의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경쟁사건처리위원회에 돌려보내 재결정을 하도록 한다.

통상산업부 장관도 경쟁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리거나 증거불충분의 경우는 경쟁청이 사건을 다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 6. 행정소송 제기

관련 당사자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어 이의신청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제소된 경우 통상산업부 장관이나 경쟁위원회 의장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7. 법위반에 대한 제재

경쟁법위반에 대한 제재의 내용은 경고와 과징금이다. 법위반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업등록증의 취소, 허가의 취소, 법위반에 사용된 수단의 몰수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 덧붙여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기업의 구조개편, 경제력집중과 관련된 기업분할이나 재매각, 공표, 사업계약에서 불법적인 내용 제거, 기타 법위반의 영향제거 등이다. 만약 법위반행위로 인해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과징금의 규모는 경쟁제한적 합의, 시장지배력 남용, 독점력 남용, 경제력집중에 있어서는 법위반행위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10%까지이다. 불공정거래행위와 기타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러한 제재결정은 경쟁위원회와 경쟁청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경쟁위원회는 주의조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기업의 구조개편, 경제력집중과 관련된 기업분할이나 재매각, 공개적인 시정조치 공표, 사업계약에서 불법적인 내용 제거, 기타 법위반의 영향제거, 관련 행정기관에 사업등록증의 취소 및 허가취소 요구이다.

경쟁청은 경고, 법위반에 사용된 수단의 몰수, 공개적인 시정조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이다.

## Ⅲ. 특징 및 시사점

### 1. 조직적인 측면

## (1) 독립성의 부족

현재 베트남 경쟁청의 조직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1994년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독립하기 이전 모습과 유사하다. 1980년에 공정거래법이 제정될 당시만 조사 및 행정조직으로서 경제기획원에 공정거래실이 있었고 의결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다.

1980년 법제정 당시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의 조사 및 사전심사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심사관을 두도록 하고, 심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여 합의제 기구를 보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심사관은 경제기획원 직제에 의해 공정거래실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일단 위반사건 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공정거래실 속에 심사관제를 도입한 것은 위반사건에 대하여 심사와 의결을 이원화시켜 위반사건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조직형태 내지 사건 처리절차는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의 대심구조라기보다는 심사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처분을 하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는 형태에 가까웠다.

1980년 당시에는 심사관의 조사 및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sup>51)</sup> 실제 처분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행하였다.<sup>52)</sup> 당시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심의·의결기관에 불과하였다. 당시 공정거래법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에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공정

51) 공정거래법(1980.12.31 제정, 법률 제3320호), 제32조

52) 상동 제5조, 제6조, 제16조 등.

거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의 대외표시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아니라 경제기획원 장관의 필수적인 자문기관에 불과하였다.

이 당시 처분권한이 없는 기관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한 적은 없었지만 심의·의결한 내용이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장의 판단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경제기획원 장관의 판단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 당시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기획원 장관의 판단이 상이한 경우에 대비한 논의들은 있었다. 경제기획원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경제기획원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며 대외적인 표시행위의 편의상 경제기획원 장관이 명의를 빌려 줄 뿐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 당시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상을 감안할 때 처분권자인 경제기획원 장관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은 된다.

1990년의 법 개정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한 심의·의결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인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동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개정으로 인해 경제기획원 장관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처분을 하고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sup>53)</sup>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경제기획원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립된 기관은 아니었다. 즉, 처분권은 부여받았지만 조직의 독립성이 부여되지 않았다.

베트남에의 경우 통상산업부 속에 경쟁청과 경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53) 공정거래법(1990.1.13 개정, 법률 제4198호), 제5조, 제6조, 제16조 등 참조

는 점에서 조직의 모습이 초기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경쟁위원회와 경쟁청이 독자적인 처분권이 있다는 점에서는 1990년 법개정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더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2005년 7월 1일부터 경쟁법집행을 시작한 베트남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선진경쟁당국과 같은 정도의 독립성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법집행 초기단계에서는 한 사회에 경쟁풍토 조성이 시급하고 경쟁관련 정책이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법집행이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독립성만 강조하기보다는 범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행정부처 내부에 설치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 (2) 권한의 분담

베트남 경쟁법 조직의 특징 중 하나는 경쟁정책과 조사를 담당하는 경쟁청과 심의기구로서의 경쟁위원회가 소추와 심의의 측면에서 권한이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합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독점력 남용,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서 제재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는 경쟁위원회에 제재의 권한이 있는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경쟁청에 제재의 권한이 있다는 점이다.

## (3) 기타

베트남은 아직까지 경쟁법 집행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경제분석이나 법률분석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아직까지도 경제분석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본격적인 경쟁법 집행의 역량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 2. 집행절차적인 측면

### (1) 사건처리 기한의 명시

어느 나라든 내부 규칙으로 사건처리 기한을 명시하고 있겠지만 베트남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사건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한 두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어 보이기에 따라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경쟁법 사건은 경제분석이나 법률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문에 결정된 이 기한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사건처리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범위반행위 유형 간 조사의 차이점

경쟁제한적 합의, 시장지배력 혹은 독점력 남용, 경제력집중의 경우 본 조사의 내용은 관련시장확정, 관련시장에서 피조사인의 시장점유율,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및 분석이다. 반면에 불공정거래 사건에서는 조사관은 피조사인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를 확보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경쟁제한적 합의, 시장지배력 혹은 독점력 남용, 경제력집중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원화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자는 경쟁법 사건답게 처리하는 반면 후자는 경제분석 등을 생략함으로써 경쟁법 사건보다는 일반 불법행위처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불공정거래 속에는 다단계나 명예훼손 등 경쟁법 사건으로 다루기 적합하지 않은 유형의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 다양한 제재

베트남 경쟁법은 범위반행위에 대하여 대단히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 경고와 과징금 외에 범위반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업등록증의 취소, 허가의 취소, 범위반에 사용된 수단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 덧붙여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기업의 구조개편, 경쟁력집중과 관련된 기업분할이나 재매각, 공표, 사업계약에서 불법적인 내용 제거, 기타 범위반의 영향제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제재의 내용이 대단히 다양하고 강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관련 행정청에 사업등록증의 취소나 허가취소의 요청, 범위반에 사용된 수단의 몰수 등은 선진국의 경쟁법에서 보기 힘든 대단히 강력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수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재의 강도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 2010년 19개 보험사의 수수료 담합건에서 베트남 경쟁당국은 아직까지 경쟁풍토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제재는 어렵다고 인정한 바 있듯이 현재로서는 제재의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경쟁풍토가 조성되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착하게 되면 제재의 강도도 점차 높아져 가리라고 생각된다.

## 제5장 결어

베트남은 사회주의 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스템이 혼합되어 있어 경쟁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다. 산업의 많은 부분들이 국유화 내지 공유화 되어 있고 점차 민영화, 자유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쟁법은 선진 경쟁법을 참고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법률에 수용되어 있다. 지금보다는 향후의 법집행이 더욱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베트남 경쟁법 집행의 과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즉 경쟁당국의 독립성 확보와 법집행역량의 강화, 경쟁당국으로서의 위상정립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 경쟁당국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경쟁법은 경제에 관한 기본법 내지 경제헌법(Wirtschaftsverfassung)으로서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압력이나 정부의 정책 혹은 여론에 휘둘리기보다는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경쟁법 집행조직의 독립성이다. 또한, 경쟁법은 법과 경제가 융합된 분야를 규제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견지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및 경쟁법 위반 사건은 준사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그 전제로서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독립성을 위한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sup>54)</sup> 이러한 독립성은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성과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모두 포함한다.

베트남 경쟁청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통상산업부 소속의 기관이다. 경쟁위원회도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통상산업부 소속의 기관이다. 일단 조직적인

---

54) 越知保見, 日米歐 獨占禁止法, 商事法務, 2005, 1011면.

측면에서 독립성이 확보 되어있지 않다. 물론 경쟁위원회는 오직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조직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많다. 경쟁청장은 통상산업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총리가 임명을 하고 경쟁위원회 위원도 마찬가지로이다. 개별 사건별로 경쟁사건처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은 경쟁위원회 의장의 권한에 속해 있다. 의장의 권한은 막강하여 위원의 교체도 가능하다. 이런 상태에서 위원들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심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제4부(fourth branch)<sup>55)</sup>라고 부를 정도로 입법·행정·사법의 삼부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고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베트남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법집행역량의 강화이다. 베트남은 2005년에 경쟁법을 집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법집행의 역량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쟁법은 법률과 경제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한다. 어느 법 분야든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경쟁법 집행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간의 권리의무관계만 파악하면 되지만 경쟁법 사건은 경쟁의 관점에서 당해 사안이 제3자 및 복잡한 시장구조와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법적인 전문성과 함께 경제적 전문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쟁법 집행조직은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합의제의 구성원으로 충원하여 다방면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즉,

---

55) '제4부'라는 표현은 1937년 President's Committee on Administrative Management(일명 'Brownlow 위원회')에 참여하였던, Robert E. Cushman의 獨立規制委員會에 대한 분석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지식을 가진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식을 감안하여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루는 대상이 복잡하고 가변적인 경쟁법 집행조직의 경우 경제적인 쟁점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경제적인 전문성이 있는 자와 법률적인 전문성이 있는 자를 합의제 구성원으로 충원함으로써 조직전체의 전문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TC v. Cement Institute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FTC의 장점으로 합의제 구성원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산업계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통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설계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베트남 경쟁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i)도덕성, 정직성, 공정성, 사회주의의 정당성 보호자격소유자 ii)법학, 경제학, 금융학 학사 소지자 iii)관련 업무에 9년이상 종사자 iv)임무수행능력 보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전문성이라는 것이 그 사회 일반 수준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경쟁당국의 특성상 법률전문가와 경제전문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법적인 전문성을 이야기 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학 관련 학위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법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경제법 전공자나 경제법 사건을 담당할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충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전문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도 심층적인 경제분석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분석팀이 신설된 것은 2006년에 와서이다. 그러나 경제분석을 담당하는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아서 전문적인 경제분석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미국의 경우 2006년 말 통계를 보면 FTC에 근무하는 경제학박사가 70여명, 법무부 반독점국(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에 근무하는 경제학박사가 60여명이나 된다고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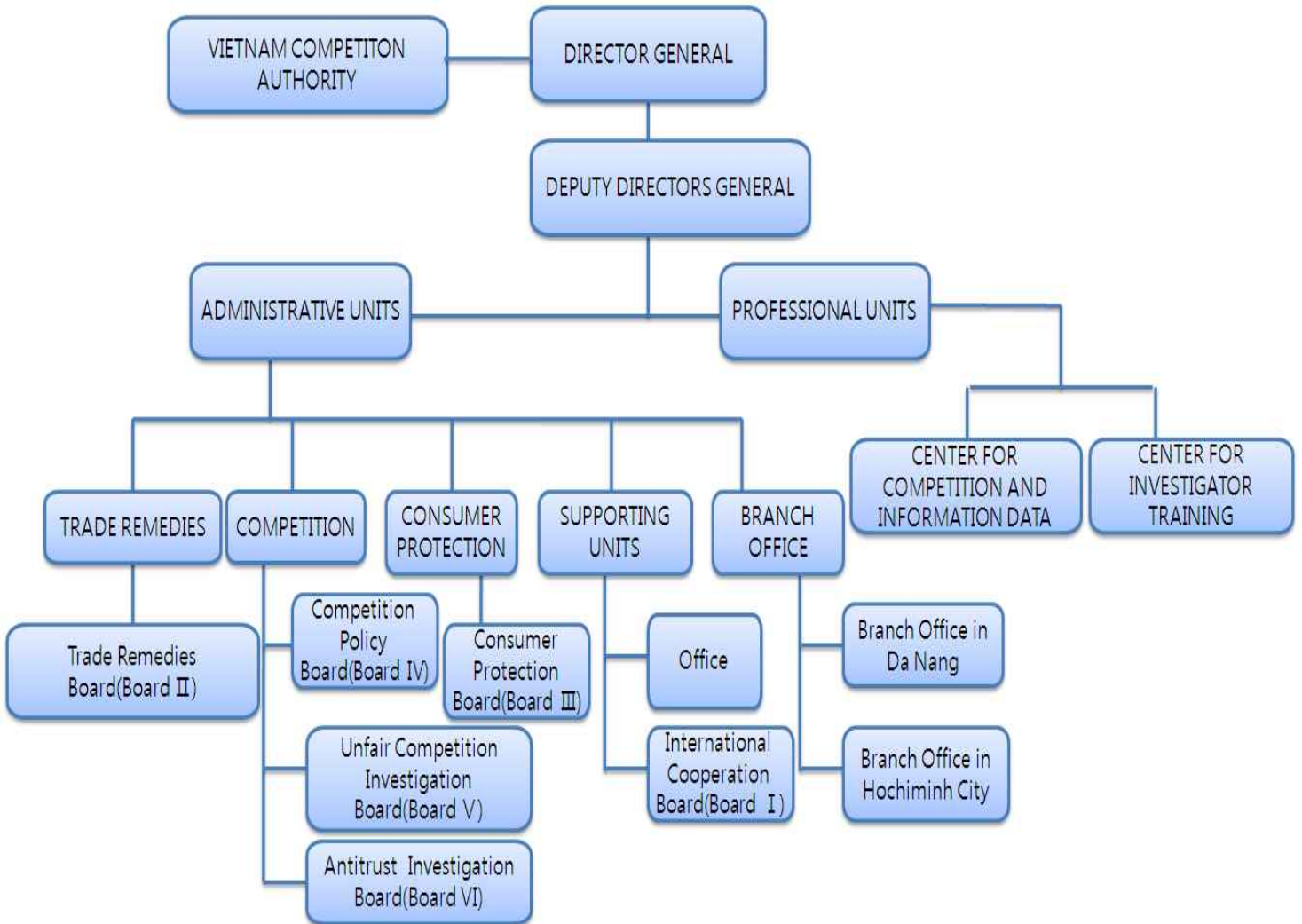
다. 그리고, 경제적인 전문성도 법적인 전문성과 마찬가지로 경제일반에 관한 막연한 지식이나 거시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산업조직론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셋째, 베트남 경쟁당국은 순수한 의미의 경쟁법 사건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 외국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사업자의 보호 등 경쟁법 고유의 영역과 무관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장경제 초기에 있는 베트남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쟁법 내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다단계판매 등 경쟁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까지 동시에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도 경쟁 내지 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범위를 축소시키고 그렇지 않은 행위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쟁법 고유의 영역이 아닌 분야는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경쟁법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첨부 1 ◆

## 베트남 경쟁청 조직도



## 베트남 경쟁법(영문)

### THE STATE PRESIDENT

#### ORDER No. 23/2004/L-CTN OF DECEMBER 14, 2004 ON THE PROMULGATION OF LAW

#### THE PRESID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Pursuant to Articles 103 and 106 of the 1992 Constitution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which was amended and supplemented under Resolution No. 51/2001/QH10 of December 25, 2001 of the Xth National Assembly, the 10th session;*

*Pursuant to Article 91 of the Law on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Pursuant to Article 50 of the Law on Promulgation of Legal Documents,*

#### PROMULGATES:

#### The Competition Law,

which was passed on December 3, 2004 by the XIth National Assembl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t its 6th session.

**Presid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RAN DUC LUONG**

#### COMPETITION LAW

*(No. 27/2004/QH11)*

*Pursuant to the 1992 Constitution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which was amended and supplemented under Resolution No. 51/2001/QH10 of December 25, 2001 of the Xth National Assembly, the 10th session;*

*This Law provides for competition.*



## *Chapter I*

###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 Scope of regulation

This Law provides for competition-restricting acts, unfair competition acts, order and procedures for settling competition cases, measures to handle violations of competition legislation.

#### ***Article 2.-*** Subjects of application

This Law shall apply to:

1. Busines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hereinafter referred collectively to as enterprises), including also enterprises producing, supplying products, providing public-utility services, enterprises operating in the State-monopolized sectors and domains, and foreign enterprises operating in Vietnam.
2. Professional associations operating in Vietnam.

#### ***Article 3.-*** Interpretation of terms

In this Law the following terms are construed as follows:

1. Relevant market means relevant market of products and relevant geographical market.  
Relevant market of products means a market of goods, services which are interchangeable in terms of characteristics, use purposes and prices.  
Relevant geographical market means a specific geographical area in which exist goods, services which are interchangeable under similar conditions of competition, and which is considerably differentiated from neighboring areas.
2. Professional associations include commodity line associations and trade associations.
3. Competition restriction acts mean acts performed by enterprises to reduce, distort and prevent competition on the market, including acts of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 abusing the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abusing the monopoly position and economic concentration.
4. Unfair competition acts mean competition acts performed by enterprises in the process of doing business, which run counter to common standards of business ethics and cause damage or can cause damage to the State's interests,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 enterprises or consumers.
5. An enterprise's market share of a certain kind of goods or service means the percentage between sale turnover of this enterprise and aggregate turnover of all enterprises dealing in such kind of goods or service on the relevant market or the percentage between purchase turnover of this enterprise and aggregate purchase turnover of all enterprises dealing in such kind of goods or service on the relevant market on a monthly, quarterly or yearly basis.
6. Combined market share means aggregate market share on the relevant market of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 or economic concentration.
7. Total cost of production of goods or services consists of:
  - a/ Cost of production of products or services; purchasing price of goods;
  - b/ Cost of circulation to bring goods, services to consumers.

8. Competition case means a case showing signs of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which is investigated and handled by a competent state agency according to law provisions.

9. Competition procedures mean activities carried out by agenc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ccording to the order and procedures for settling and handling competition cases prescribed by this Law.

10. Business secret means information that fully meets the following conditions:

a/ Being other than common knowledge;

b/ Being applicable to business and, once used, placing the holder ..)f such information at an advantage over the non-holder or non-user of such information;

c/ Being kept confidential by the owner by applying necessary measures to keep such information from disclosure and easy access.

11. Multi-level sale means an approach of marketing to retail goods, which meets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e marketing to retail goods is conducted through a multi-level and multi-branch network of participants in the multi-level sale;

b/ Goods are marketed by participants in the multi-level sale directly to consumers at the customers' homes, working places or other places other than regular retail places of the enterprises or participants;

c/ Participants in the multi-level sale enjoy commissions, bonuses or other economic benefits from the sale results of their own and of lower-level multi-level sale participants within the network which is organized by themselves and approved by the multi-level sale enterprises.

#### ***Article 4.-*** Right to business competition

1. Enterprises enjoy freedom to competition within the legal framework. The State protects the lawful right to business competition.

2. Competition must be implemented on the principles of honesty, non-infringement upon the interests of the State, public interests,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enterprises, consumers and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 ***Article 5.-*** Application of this Law, other relevant law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1. Where there is any disparity between the provisions of this Law and those of other laws on competition restriction acts or unfair competition acts, the provisions of this Law shall apply.

2. Where international agreements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has signed or acceded to contain provisions different from those of this Law, the provisions of such international agreements shall apply.

***Article 6.-*** Acts that State management agencies are prohibited from performing  
State management agencies are prohibited from performing the following acts to prevent competition on the market:

1. To force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o buy, sell goods, provide services to enterprises which are designated by these agencies, except for goods and services in the State-monopolized domains or in emergency cases prescribed by law;

2. To discriminate between enterprises;
3. To force professional associations or enterprises to align with one another with a view to precluding, restricting or preventing other enterprises from competing on the market;
4. Other acts that prevent lawful business activities of enterprises.

**Article 7.-** State management responsibilities for competition

1. The Government performs uniform State management over competition.
2. The Trade Ministry shall be responsible to the Government for performing the State management over competition.
3. Ministries, ministerial-level agencies, provincial/municipal People's Committe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tasks and powers, have to coordinate with the Trade Ministry in performing the State management over competition.

## **Chapter II**

### **CONTROL OF COMPETITION RESTRICTION ACTS**

#### **Section 1.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Article 8.-**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include:

1. Agreements on directly or indirectly fixing goods or service prices;
2. Agreements on distributing outlets, sources of supply of goods, provision of services;
3. Agreements on restricting or controlling produced, purchased or sold quantities or volumes of goods or services;
4. Agreements on restricting technic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restricting investments;
5. Agreement on imposing on other enterprises conditions on signing of goods or services purchase or sale contracts or forcing other enterprises to accept obligations which have no direct connection with the subject of such contracts;
6. Agreements on preventing, restraining, disallowing other enterprises to enter the market or develop business;
7. Agreements on abolishing from the market enterprises other than the parties of the agreements;
8. Conniving to enable one or all of the parties of the agreement to win bids for supply of goods or provision of services.

**Article 9.-** Prohibited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1.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prescribed in Clauses 6, 7 and 8 of this Law are prohibited.
2.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prescribed in Clauses 1, 2, 3, 4 and 5, Article 8 of this Law the parties of which have combined market share of 30% or more on the relevant market are prohibited.

**Article 10.-** Cases of exemption with regard to prohibited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1.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defined in Clause 2, Article 9 of this Law shall enjoy exemption for a definite term if they meet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n order to reduce costs to benefit consumers:

- a/ Rationaliz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business model, raising business efficiency;
- b/ Promoting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ances, raising goods and service quality;
- c/ Promoting the uniform application of quality standards and technical norms of products of different kinds;
- d/ Harmonizing business, goods delivery and payment conditions, which have no connection with prices and price factors;
- e/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Vietnamese enterprises on the international market.

2. The order, procedures for granting exemptions and exemption terms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4 of this Chapter.

## **Section 2. ABUSE OF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ABUSE OF MONOPOLY POSITION**

**Article 11.-** Enterprises, groups of enterprises holding the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1. Enterprises shall be considered to hold the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if they have market shares of 30% or more on the relevant market or are capable of restricting competition considerably.

2. Groups of enterprises shall be considered to hold the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if they take concerted action to restrict competition and fall into one of the following cases:

- a/ Two enterprises having total market share of 50% or more on the relevant market;
- b/ Three enterprises having total market share of 65% or more on the relevant market;
- c/ Four enterprises having total market share of 75% or more on the relevant market;

**Article 12.-** Enterprises holding the monopoly position

An enterprise shall be considered to hold the monopoly position if there is no enterprise competing on the goods or services dealt in by such enterprise on the relevant market.

**Article 13.-** Prohibited acts of abusing the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Enterprises, groups of enterprises holding the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are prohibited from performing the following acts:

1. Selling goods, providing services at prices lower than the aggregate costs in order to eliminate competitors.
2. Imposing irrational buying or selling prices of goods or services or fixing minimum re-selling prices causing damage to customers;
3. Restricting production, distribution of goods, services, limiting markets, preventing technic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causing damage to customers;

4. Imposing dissimilar commercial conditions in similar transactions in order to create inequality in competition;
5. Imposing conditions on other enterprises to conclude goods or services purchase or sale contracts or forcing other enterprises to accept obligations which have no direct connection with the subject of such contracts;
6. Preventing new competitors from entering the market.

**Article 14.-** Prohibited acts of abusing the monopoly position

Enterprises holding the monopoly position are prohibited from performing the following acts:

1. Acts defined in Article 13 of this Law;
2. Imposing unfavorable conditions on customers;
3. Abusing the monopoly position to unilaterally modify or cancel the contracts already signed without plausible reasons.

**Article 15.-** Control of enterprises operating in the State monopolized domains, enterprises producing, supplying public-utility products, services

1. The State controls enterprises operating in the State-monopolized domains with the following measures:

a/ Deciding on the buying prices, selling prices of goods, services in the State-monopolized domains;

b/ Deciding on the quantities, volumes and scope of market of goods, services in the State monopolized domains.

2. The State controls enterprises producing and supplying public-utility products, services with measures of ordering goods, assigning plans or bidding according to prices or charges set by the State.

3. When undertaking other business activities outside the State-monopolized domains and producing, providing public-utility products, services, enterprises shall not b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Clause 1 and Clause 2 of this Article but still b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other provisions of this Law.

### **Section 3. ECONOMIC CONCENTRATION**

**Article 16.-** Economic concentration

Economic concentration means acts of enterprises, including:

1. Merger of enterprises;
2. Consolidation of enterprises;
3. Acquisition of enterprises;
4. Joint venture between enterprises;
5. Other acts of economic concentration prescribed by law.

**Article 17.-** Merger, consolidation, acquisition of enterprises and joint venture between enterprises

1. Merger of enterprises means an act whereby one or several enterprises transfer all of

its/their property, rights, obligations and legitimate interests to another enterprise, and at the same time terminate the existence of the merged enterprise (s).

2. Consolidation of enterprises means an act whereby two or more enterprises transfer all of their property, rights, obligations and legitimate interests to form a new enterprise and, at the same time, terminate the existence of the consolidated enterprises.

3. Acquisition of enterprises mean an act whereby an enterprise acquires the whole or part of property of another enterprise sufficient to control or dominate all or one of the trades of the acquired enterprise.

4. Joint venture between enterprises means an act whereby two or more enterprises jointly contribute part of their property, rights, obligations and legitimate interests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enterprise.

**Article 18.-** Prohibited cases of economic concentration

Economic concentration shall be prohibited if the combined market shares of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economic concentration account for over 50% on the relevant market, except for cases specified in Article 19 of this Law or the case where enterprises, after implementing economic concentration, are still of small or medium size as prescribed by law.

**Article 19.-** Cases of exemption from prohibited economic concentration

Prohibited economic concentration prescribed in Article 18 of this Law may be considered for exemption in the following cases:

1. One or more of the participants in economic concentration is/are in danger of dissolution or bankruptcy;

2. The economic concentration has an effect of expanding export or contributing to socio-economic development,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ance.

**Article 20.-** Notifica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1. If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economic concentration have combined market shares of between 30 and 50% on the relevant market, their lawful representatives must notify the competition managing agency before implementing economic concentration.

Where combined market shares of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economic concentration are lower than 30% on the relevant market or where enterprises, after implementing economic concentration, are still of small or medium size as prescribed by law, such notification is not required.

2.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economic concentration eligible for exemption prescribed in Article 19 of this Law shall submit exemption application dossiers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4 of this Chapter instead of notifica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Article 21.-** Economic-concentration notification dossiers

1. An economic-concentration notification dossier shall comprise:

a/ The written notifica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made according to a form set by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b/ Valid copies of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s of all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economic concentration;

c/ Financial statements of the latest two consecutive years of each enterprise participating in economic concentration, with the certification of audit organizations according to law provisions;

d/ The list of dependent units of each enterprise participating in economic concentration;

e/ The list of kinds of goods, services dealt in by each enterprise participating in economic concentration and by its dependent units;

f/ Reports of the latest two consecutive years of each enterprise participating in economic concentration on their market shares on the relevant market.

2. Enterprises submitting the economic concentration notification dossiers shall be accountable for the truthfulness of their dossiers.

**Article 22.-** Acceptance of economic concentration notification dossiers

Within seven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the economic-concentration notification dossiers,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shall have to notify in writing the dossier-submitting enterprises of the validity and completeness of their dossiers; where a dossier is incomplete,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shall have to clearly point out the contents that have to be supplemented.

**Article 23.-** Time limit for reply to economic concentration notification

1. Within forty five days after receiving complete economic-concentration notification dossiers,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shall have to reply in writing to the dossier-submitting enterprises. Written replies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must determine whether economic concentration falls into one of the following cases:

a/ Economic concentration does not fall into the prohibited cases;

b/ Economic concentration is prohibit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8 of this Law; the prohibition reason must be clearly stated in the written reply.

2. Where economic concentration involves many complicated circumstances,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may extend the time limit for reply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no more than twice, each time for no more than thirty days and notify such in writing to the dossier submitting enterprises no later than three working day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for reply, clearly stating the extension reason.

**Article 24.-** Implementa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Lawful representatives of the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economic concentration subject to notification as prescribed in Clause 1 , Article 20 of this Law may only carry out economic concentration procedures at the competent State agencies prescribed by legislation on enterprises after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replies in writing that such economic concentration does not fall into any prohibited cases.

**Section 4. PROCEDURES FOR EXECUTION OF EXEMPTION CASES**

**Article 25.-** Competence to decide on exemption

1. The Trade Minister shall consider and decide in writing on the exemption prescribed in

Article 10 and Clause 1, Article 19 of this Law.

2. The Prime Minister shall consider and decide in writing on the exemption prescribed in Clause 2, Article 19 of this Law.

**Article 26.-** Subjects submitting exemption application dossiers

The subjects submitting exemption application dossiers are the parties intending to participate in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or economic concentration.

**Article 27.-** Lawful representatives of parties of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or economic concentration

1. The parties of the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or economic concentration may appoint a representative to carry out the procedures to apply for exemption. The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s must be made in writing and certified by the involved parties.

2.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representative party shall be determined by the involved parties;

3. The par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acts of the representative party within the scope of authorization.

**Article 28.-** Dossiers of application for exemption for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1 . A dossier of application for exemption for a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 shall comprise:

a/ The application, made according to the form set by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b/ The valid copies of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s of each enterprise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 and the charter of the association for cases where the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 is participated by such association;

c/ Financial statements of the latest two consecutive years of each enterprise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 with the certification of audit organizations according to law provisions;

d/ Reports of the latest two consecutive years of each enterprise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 on their market shares on the relevant market;

e/ A report elaborating the satisfaction of the cases eligible for exemption prescribed in Article 10 of this Law;

f/ The written authorization of the representative party by the parties of the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

2. The dossier submitters and the parties of the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shall be accountable for the truthfulness of their dossiers.

**Article 29.-** Dossiers of application for exemption for economic concentration

1. A dossier of application for exemption for economic concentration shall comprise:

a/ The application, made according to the form set by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b/ The valid copies of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s of each enterprise participating in economic concentration;



c/ Financial statements of the latest two consecutive years of each enterprise joining in economic concentration, with the certification of audit organizations according to law provisions;

d/ Reports of the latest two consecutive years of each enterprise participating in economic concentration on their market shares on the relevant market;

e/ A report elaborating the satisfaction of the cases eligible for exemption prescribed in Article 19 of this Law;

f/ The written authorization of the representative party by the parties of economic concentration.

2. The dossier submitters and the parties of economic concentration shall be accountable for the truthfulness of their dossiers.

**Article 30.-** Acceptance of exemption application dossiers

1.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shall be responsible for accepting exemption application dossiers, putting forward its opinions to the Trade Minister for decision or submission to the Prime Minister for decision.

2. Within seven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exemption application dossiers, the competition managing agency shall have to notify in writing the dossier submitters of the completeness of their dossiers. Where a dossier is incomplete,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must point out the contents that have to be supplemented.

3. The dossier submitters must pay a fee for evaluation of exemption application dossiers according to law provisions.

**Article 31.-** Requests for supplementation of exemption application dossiers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may request the submitters of exemption application dossiers to supplement necessary documents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ir intention to implement the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or economic concentration and give additional explanation on unclear matters.

**Article 32.-** Supply of information by related parties

1.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may request related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supply information on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or economic concentration which it is handling.

2. Within fifteen days after receiving the requests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related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have to reply in writing to the requests.

**Article 33.-** Withdrawal of exemption applications

1. If wishing to withdraw their exemption applications, the dossier submitters must notify in writing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thereof.

2.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shall not refund the fee for evaluation of exemption application dossiers in the case prescrib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Article 34.-** Time limit for issuance of decisions

1. Within sixty days after receiving complete exemption application dossiers, the Trade Minister shall issue one of the following decisions:

a/ Approving the exemption for the parties;

b/ Disapproving the exemption for the parties.

2. For cases involving many complicated circumstances, the Trade Minister may extend the time limit for issuance of decisions prescrib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no more than twice, each for thirty days at most.

3. In case of economic concentration falling under the Prime Minister's competence to grant exemption, the time limit for issuance of decisions approving or disapproving exemption shall be ninety days a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complete exemption application dossiers; for cases involving many complicated circumstances, the time limit for issuance of such decisions shall be one hundred and eighty days.

4. In case of extension of the time limit for issuance of decisions,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shall notify in writing the dossier submitters not later than three working days before the expiration of such time limit, clearly stating the reason therefor.

**Article 35.-** Decisions on grant of exemption

1 . A decision on grant of exemption must contain the following principal details:

a/ Names and addresses of the parties approved to perform the act;

b/ The details of the act to be performed;

c/ The time limit for enjoyment of exemption, condition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2.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shall have to publicize the decisions on grant of exemption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regulations.

**Article 36.-**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economic concentration for cases of enjoyment of exemption

1. The parties of the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that enjoy exemption may implement their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only after the decisions on grant of exemption are issued by the Trade Minister.

2. Lawful representatives of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economic concentration eligible for exemption may carry out procedures for economic concentration only at the competent Stage agencies prescribed by enterprise legislation after the decisions on grant of exemption are issued by the Prime Minister or the Trade Minister.

**Article 37.-** Cancellation of decisions on grant of exemption

1. The agency competent to issue decisions on grant of exemption shall be entitled to cancel decisions on grant of exemption.

2. Decisions on grant of exemption shall be cancelled in the following cases:

a/ Frauds in the exemption application are detected;

b/ Enterprises enjoying exemption fail to abide by the conditions and obligations within the time limit stated in the decisions on grant of exemption;

c/ The conditions for grant of exemption no longer exist.

**Article 38.-** Complaints about decisions related to grant of exemption

Enterprises which disagree with the decisions on grant or non-grant of exemption or decisions canceling the decisions on grant or exemption may lodge complaints according to law provisions

on complaints and denunciations.

### ***Chapter III***

#### **UNFAIR COMPETITION ACTS**

***Article 39.-*** Unfair competition acts

Unfair competition acts in this Law include:

1. Misleading indications;
2. Infringement upon business secrets;
3. Constraint in business;
4. Discrediting other enterprises;
5. Disturbing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enterprises;
6. Advertising for the purpose of unfair competition;
7. Sale promotion for the purpose of unfair competition;
8. Discrimination by associations;
9. Illicit multi-level sale;
10. Other unfair competition acts according to the criteria determined in Clause 4, Article 3 of this Law and prescribed by the Government.

***Article 40.-*** Misleading indications

1. Enterprises are forbidden to use instructions containing information causing confusions about trade names, business mottoes, business logos, packing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other elements as prescribed by the Government to mislead customers about goods or services for the purpose of competition.

2. It is forbidden to do business in goods or services using misleading information prescrib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Article 41.-***Infringement upon business secrets

Enterprises are forbidden to perform the following acts:

1. Accessing and collecting information belonging to business secrets by counteracting the security measures applied by lawful owners of such business secrets;

2. Disclosing, using information belonging to business secrets without the permission of owners of such business secrets;

3. Breaching security contracts or deceiving or taking advantage of the trust of persons having the security duty in order to access, collect or disclose information belonging to business secrets of owners of such business secrets;

4. Accessing, collecting information belonging to business secrets of other persons when such persons carry out procedures according to law provisions concerning business, carry out procedures for product circulation, or by counteracting the measures applied by State agencies, or using such information for business purposes, application for licenses related to business or product circulation.

**Article 42.-** Constraint in business

Enterprises are forbidden to constrain customers, business partners of other enterprises by performing acts of threatening or forcing them not to enter in transactions or to stop transactions with such enterprises.

**Article 43.-** Discrediting other enterprises

Enterprises are forbidden to discredit other enterprises by performing acts of directly or indirectly issuing untruthful information badly affecting the latter's reputation, financial status and business activities.

**Article 44.-** Disturbing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enterprises

Enterprises are forbidden to disturb lawful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enterprises by performing acts of directly or indirectly preventing, disrupting the latter's business activities.

**Article 45.-** Advertising for the purpose of unfair competition

Enterprises are forbidden to carry out the following advertising activities:

1. Comparing their goods, services directly with those of the same kind of other enterprises;
2. Imitating other advertising products to mislead customers;
3. Issu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to customers on one of the following contents:
  - a/ Prices, quantities, quality, utilities, designs, categories, packings, date of manufacture, use duration, goods origin, manufacturers, places of manufacture, processors, places of processing;
  - b/ Usage, mode of servicing, warranty duration;
  - c/ Other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4. Other advertising activities prohibited by law.

**Article 46.-** Sale promotion for the purpose of unfair competition

Enterprises are forbidden to carry out the following sale promotion activities:

1. Organizing sale promotion with prize frauds;
2. Organizing sale promotion which is dishonest or causes confusion about goods, services in order to cheat customers;
3. Discriminating between similar customers at different sale promotion places under the same sale promotion program;
4. Presenting goods free to customers for trial use but requesting customers to use their goods in exchange for similar goods manufactured by other enterprises and currently used by such customers;
5. Other sale promotion activities prohibited by law.

**Article 47.-** Discrimination by associations

Professional associations are forbidden to perform the following acts:

1. Refusing to admit enterprises eligible for admission or refusing to allow enterprises to withdraw from the associations in a discriminatory way, placing such enterprises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2. Irrationally restricting business activities or other business-related activities of member

enterprises.

**Article 48.-** Illicit multi-level sale

Enterprises are forbidden to perform the following acts to gain illicit profits from the recruitment of participants into the multi-level sale networks:

1. Requesting those who wish to participate to pay a deposit, buy an initial volume of goods or pay a sum of money for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multi-level sale network;
2. Not to commit to buy back goods at 90% at least of the price at which the goods were sold to participants for re-sale;
3. To give participants commissions, bonuses or other economic benefits which are gained mostly from the enticement of other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multi-level sale network;
4. Supplying false information on the benefits of the participation in the multi-level sale network, false information on the nature and utilities of goods in order to entice the participation of other people.

**Chapter IV**

**COMPETITION-MANAGING AGENCY, COMPETITION COUNCIL**

**Section 1. COMPETITION-MANAGING AGENCY**

**Article 49.-** Competition-managing agency

1. The Government shall decide to establish, and prescribe the organization and apparatus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2.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shall have the following tasks and powers:
  - a/ To control the process of economic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Law;
  - b/ Accepting exemption application dossiers; put forward opinions to the Trade Minister for decision or submission to the Prime Minister for decision;
  - c/ Investigating competition cases related to competition-restricting acts and unfair competition acts;
  - d/ Handling and sanctioning unfair competition acts;
  - e/ Other tasks prescribed by law.

**Article 50.-**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1.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shall be appointed or dismissed by the Prime Minister at the proposal of the Trade Minister.
2.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shall have to organize and direct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to perform the tasks and powers defined in Clause 2, Article 49 of this Law.

**Article 51.-** Investigators of competition cases

1. Investigators of competition cases (hereinafter called investigators) shall be appointed by the

Trade Minister at the proposal of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2. Investigators shall investigate specific competition cases under decisions of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Article 52.-** Criteria of investigators

Persons who fully meet the following criteria may be appointed investigators:

1. Possessing good ethical qualities, being honest, impartial;
2. Having the degree of bachelor of law, economics or finance;
3. Having worked at least five years in one of the domains defin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4. Having been trained in professional investigation skills.

**Section 2. COMPETITION COUNCIL**

**Article 53.-** Competition Council

1. The Competition Council is an agency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The Competition Council shall be composed of between eleven and fifteen members appointed or dismissed by the Prime Minister at the proposal of the Trade Minister.

2. The Competition Council shall have to organize the handling and settlement of complaints about competition cases involving competition restricting act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Law.

**Article 54.-** Chairman of the Competition Council

1. The Competition Council chairman shall be appointed or dismissed by the Prime Minister among the Competition Council members at the proposal of the Trade Minister.

2. The Competition Council chairman shall have to organize the operation of the Competition Council.

3. The Competition Council chairman shall decide to set up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composed of at least five members of the Competition Council, one of whom shall chair hearings to deal with a specific competition case.

**Article 55.-** Criteria of Competition Council members

1. Persons who fully meet the following criteria may be appointed as Competition Council members:

- a/ Possessing good ethical qualities, being honest, impartial, and having the sense of protecting socialist legality;
- b/ Having the degree of bachelor of law, economics or finance;
- c/ Having worked at least nine years in one of the domains defined at Point b, Clause 1 of this Article;
- d/ Being capable of fulfilling the assigned tasks.

2. Competition Council members shall have a five-year term of office and may be re-appointed.

## *Chapter V*

### **INVESTIGATION, HANDLING OF COMPETITION CASES**

####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56.-*** Principles for competition procedures

1 . The settlement of competition cases involving competition-restricting acts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2. The settlement of competition cases involving unfair competition acts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and legislation on handl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3.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competition procedures, investigators,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and Competition Council members must,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tasks and powers, keep confidential business secrets of enterprises, respect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rticle 57.-*** Language and script used in competition procedures

The language and script used in competition procedures is Vietnamese. Participants in competition procedures shall be entitled to use their native language and script; in this case interpretation is required.

***Article 58.-*** Complaints about competition cases

1. I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deem that their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are infringed upon by acts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hereinafter referred collectively to as complainants), they may lodge complaints with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2.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lodging complaints is two years, as from the date the acts involving signs of violation of competition legislation are committed.

3. Complaint dossiers must comprise the following principal documents:

- a/ The written complaint, made according to a form set by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 b/ Evidences on the violation act.

4. Complainants shall be accountable for the truthfulness of evidences they supply to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Article 59.-*** Acceptance of complaint dossiers

1 .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shall have to accept complaint dossiers.

2. Within seven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complaint dossiers,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shall have to notify in writing the complainants of the acceptance of their dossiers.

3. Complainants must pay an advance for the cost of handling the competition case according to law provisions.

***Article 60.-*** Evidences

1. Evidences are facts used by investigators and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as

grounds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exist acts of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is Law.

2. Evidences are determin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a/ Exhibits, which are things used as tools or means for commission of violations, money and other things having the effect of proving acts of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is Law;

b/ Testimonies of witnesses, explanation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c/ Original documents, copies and translations of original documents which are lawfully notarized or authenticated or supplied and certified by competent agencies or organizations.

d/ Expertise conclusions.

**Article 61.-**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preventive measures

1.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the Competition Council chairman may apply some administrative preventive measures prescribed by legislation on handl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in the cases specified in Clause 6, Article 76 and Clause 4, Article 79 of this Law.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administrative preventive measures that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and the Competition Council chairman may apply.

2. The following persons may propose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preventive measures:

a/ Complainants may make such a proposal to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and the Competition Council chairman;

b/ Investigators may make such a proposal to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c/ Presidents of hearings may make such a proposal to the Competition Council chairman.

3. In case of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preventive measures at the proposals of complainants, the complainants shall have to pay a guaranty money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regulations.

In cases of wrong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preventive measures, causing damage to the investigated parties, the complainants must pay compensation therefor. The compensation level shall be agreed upon by the complainants and the investigated parties; if the two parties cannot reach agreement thereon, they may initiate lawsuits at court to claim for damage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civil legislation.

4. Where the administrative preventive measures are applied at variance of the requests of investigators or the hearing presidents, thereby causing damage to the investigated parties,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or the Competition Council must pay compensation therefor. The level of compensation shall be agreed upon by the investigated parties and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or the Competition Council; if they cannot reach agreement thereon, the investigated parties may initiate lawsuits at courts to claim for damage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civil legislation. If compensation must be paid, the competition managing agency or the Competition Council must identify the responsibility, also including material responsibility, of the proposers and related persons so as to impose proper disciplinary forms on such persons and force them to indemnify for the money amounts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or the Competition Council has compensated to the investigated parties.

5. The parties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preventive measures may lodge complaints about the decisions thereon according to the law provisions on complaints and denunciations.



**Article 62.-** Competition case-handling charges

Competition case-handling charges shall be used for the handling of competition case. The Government shall prescribe the levels, collection, payment, management and use of such charge i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on charges and fees.

**Article 63.-** Liability to competition case-handling charges

1. The party that is concluded to have violated the provisions of this Law must pay competition case-handling charges.

2. Where the invested party does not violate the provisions of this Law, the complainant shall have to pay competition case-handling charges.

3. Where a competition case is conducted under the provisions of Clause 2, Article 65 of this Law, if the investigated party does not violate the provisions of this Law,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shall have to pay competition case-handling charges.

**Section 2. COMPETITION PROCEDURE PARTICIPANTS**

**Article 64.-** Competition procedure participants

Competition procedure participants include:

1. The complainant;
2. The investigated party;
3. Lawyers;
4. Witnesses;
5. Experts;
6. Interpreter;
7. Persons with related interests and obligations.

**Article 65.-** Investigated parties in competition cases

The investigated parties in competition cases (hereinafter called investigated parties) are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hat are investigated under decisions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in the following cases:

1. Being complained agains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58 of this Law;
2. Being detected by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to be committing or have committed acts involving signs of violation of competition legislation within two years as from the date such acts were committed.

**Article 66.-** Rights and obligations of involved parties

- 1 . The investigated party shall have the following rights:
  - a/ To produce documents, things; to know documents and things produced by the complainants or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 b/ To participate in hearings;
  - c/ To request the change of investigators,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embers if detecting that they fall into one of the cases prescribed in Article 83 of this Law;

- d/ To authorize lawyers to participate in competition procedures;
- e/ To request witnesses;
- f/ To propose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to request expertise;
- g/ To propose the change of competition procedure-conducting persons and competition procedure participant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Law.

2. The complainant shall have the following rights:

- a/ The rights prescribed in Clause 1 of this Law;
- b/ To propose the head of the competition managing agency or the Competition Council chairman to apply administrative preventive measures related to the competition cases.

3. The investigated party and the complainant shall have the following obligations:

- a/ To supply full, truthful, accurate evidences in a timely manner related to their proposals or requests;

- b/ To appear in response to the summonses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or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Where they are summoned but fail to appear without plausible reasons,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shall proceed with handling the cases based on available information;

- c/ To abide by decisions of the competition managing agency and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Article 67.-** Lawyers of the complainants, the investigated parties

1. Lawyers who fully meet the procedure-participating conditions prescribed by legislation on lawyers and are authorized by the complainants or investigated parties may participate in competition procedures to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which they represent.

2. When participating in competition procedures, lawyers shall have the following rights and obligations:

- a/ To participate in all stages of the process of competition procedures;
- b/ To verify and collect evidences and supply them in order to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which they represent;

- c/ To study documents in the competition case dossiers and to take notes and copy necessary documents in such dossiers in order to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which they represent;

- d/ To propose on behalf of the parties they represent the change of competition procedure-conducting persons and/or competition procedure participant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Law;

- e/ To render legal assistance to the parties they represent in order to protect their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 f/ To respect truth and law; not to bribe, force or incite other persons to give false testimonies or supply untruthful documents;

- g/ To appear in response to the summonses of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 h/ Not to disclose investigation secrets they know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competition procedures; not to use their notes and copies of documents in the competition case dossiers for

the purpose of infringing upon the State's interests or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rticle 68.- Witnesses**

1. Persons who know about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competition cases may be summoned by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to participate in competition procedures in the capacity as witnesses or invited by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in the capacity as witnesses at the requests of the involved parties. Persons who have lost their civil act capacity must not act as witnesses.

2. Witnesses shall have the following rights and obligations:

a/ To supply all documents, papers and things they have, which are related to the settlement of competition cases; give testimony verbally or in writing to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or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on all circumstances they know, which are related to the settlement of competition cases;

b/ To participate in hearings and give testimony to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c/ To be allowed to take leave when they are summoned by, or give testimony to,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or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if they are working for State agencies, organizations or enterprises;

d/ To be paid for travel expenses and enjoy other regimes as prescribed by law;

e/ To refuse to give testimony if such testimony is related to State secrets, professional secrets or personal privacy or badly, disadvantageously affects the complainants or investigated parties that are their close relatives;

f/ To honestly report on circumstances they know, which are related to the settlement of competition cases;

g/ To pay damages and take responsibility before law for their false testimony causing damage to the complainants, investigated parties or other persons;

h/ To appear at the hearings in response to the summonses of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if they must give testimony publicly at the hearings;

i/ To pledge before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or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to exercise their rights and fulfill their obligations, except for minor witnesses.

3. Witnesses who refuse to give testimony, give false testimony, supply false materials or are absent without plausible reasons when being summoned by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shall have to bear responsibility according to law provisions, except for the case prescribed at Point e, Clause 2 of this Article.

4. Witnesses shall be protected according to law provisions.

**Article 69.- Experts**

1. Experts are those who have necessary knowledge about the matters to be expertised at the request of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or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at the request of the involved parties after it is accepted by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or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according to law provisions.

2. Experts shall have the following rights and obligations:

a/ To read documents in the competition case dossiers which are related to the expertised subject; to request the expertise-requesting agency to supply materials necessary for expertise;

b/ To raise questions to the competition procedure participants on matters related to the expertised subject;

c/ To appear in response to the summonses of the expertise-requesting agency, give answers on matters related to the expertise as well as expertise conclusions in an honest, grounded and objective manner;

d/ To notify in writing the expertise-requesting agency of the impossibility to expertise because the matters requested to be expertised fall beyond their professional capability or the supplied documents are not enough or are of no use for expertise;

e/ To preserve the received documents and return them to the expertise-requesting agency together with the expertise conclusions or the notice on the impossibility to expertise;

f/ Not to collect by themselves documents for expertise, not to privately contact other competition procedure participants if such contact affects the impartiality of the expertise results; not to disclose information they know in the expertising process, not to notify the expertise results to other persons, except for the signees of the expertise-requesting decisions;

g/ To write their opinions on the written general conclusions if disagreeing with the general conclusions in the case of collective expertise;

h/ To be paid for travel expenses and enjoy other regimes according to law provisions.

3. Experts who refuse to give expertise conclusions without plausible reasons or give false expertise conclusions or are absent without plausible reasons when summoned by the expertise-requesting agency shall have to bear responsibility according to law provisions.

4. Experts must refuse to participate in competition procedures or be changed in the following cases:

a/ They fall into one of the cases prescribed in Article 83 of this Law;

b/ They have participated in competition procedures in the capacity as lawyers, witnesses or interpreters in the same competition case;

c/ They have conducted procedures in such competition case in the capacity as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embers.

#### ***Article 70.- Interpreters***

1. Interpreters are those who are capable of translating a language other than Vietnamese into Vietnamese and vice versa in case where competition procedure participants cannot use Vietnamese. Interpreters shall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the involved parties and accepted by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shall be appointed by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2. Interpreters shall have the following rights and obligations:

a/ To appear in response to the summonses of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b/ To interpret in an truthful, objective and accurate manner;

c/ To ask competition procedure-conducting persons and competition procedure participants to explain the contents more clearly for interpretation;

d/ Not to contact other competition procedure participants if such contact may affect the truthfulness, objectivity and accuracy of the interpretation;

e/ To be paid for travel expenses and enjoy other regimes according to law provisions;

f/ To pledge before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to exercise their rights and fulfill their obligations.

3. Interpreters who deliberately give false interpretation or are absent without plausible reasons when summoned by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shall have to bear responsibility according to law provisions.

4. Interpreters must refuse to participate in competition procedures or be changed in the following cases:

a/ They fall into one of the cases prescribed in Article 83 of this Law;

b/ They have participated in competition procedures in the capacity as lawyers, witnesses or experts in the same competition case;

c/ They have conducted procedures in such competition case in the capacity as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embers.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lso apply to those who understand the signs given by dumb or deaf competition procedure participants.

Where only the representatives or relatives of dumb or deaf competition procedure participants can understand the latter's signs, they may be accepted by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to act as interpreters for such dumb or deaf persons.

**Article 71.-** Persons with interests, obligations related to competition case

1. Persons with related interests, obligations may file independent claims or participate in competition procedures on the side of the complainants or investigated parties.

2. Persons with related interests, obligations who file independent claims or participate in competition procedures on the side of the complainants or persons with interests only shall have the complainant's rights and obligations prescribed in Article 66 of this Law.

3. Persons with related interests, obligations who participate in competition procedures on the side of the investigated parties or persons with obligations only shall have the investigated party's rights and obligations prescribed in Article 66 of this Law.

**Article 72.-** Procedures for refusing expertise, interpretation or requesting change of experts or interpreters

1. The refusal of expertise or interpretation or request for change of experts or interpreters before the opening of hearings must be made in writing, clearly stating the reasons therefor.

2. The refusal of expertise or interpretation or request for change of experts or interpreters during a hearing must be written in the hearing's minutes.

**Article 73.-** Deciding on change of experts or interpreters

1. Before opening a hearing, the change of experts or interpreters shall be decided by the Competition Council chairman.

2. During a hearing, the change of experts or interpreters shall be decided by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persons requested to be changed and other competition procedure participants.

If it is necessary to change experts or interpreters,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shall issue a decision to postpone the hearing. The request for expertise by other experts or the appointment of other interpreters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69 and Article 70 of this Law.

## ***Section 2. COMPETITION PROCEDURE-CONDUCTING AGENCIES, COMPETITION PROCEDURE-CONDUCTING PERSONS***

### ***Article 74.-*** Competition procedure-conducting agencies

Competition procedure-conducting agencies include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and the Competition Council.

### ***Article 75.-*** Competition procedure-conducting persons

Competition procedure-conducting persons include Competition Council members,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investigators and the hearing's clerks.

***Article 76.-*** Tasks and powers of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when conducting competition procedures

When conducting competition procedures,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shall have the following tasks and powers:

1. To decide to assign investigators to investigate specific competition cases;
2. To inspect investigative activities of competition case investigators;
3. To decide to modify or cancel groundless and illegal decisions issued by competition case investigators;
4. To decide to change competition case investigators;
5. To decide to request expertise;
6. To decide to apply, change or cancel administrative preventive measures pending the transfer of competition case dossiers to the Competition Council for handling;
7. To decide to conduct preliminary investigation, stop investigation, conduct official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cases falling under the competence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8. To invite witnesses at the requests of the involved parties at the investigation stage;
9. To sign written conclusions on the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cases, submitted by the assigned investigators;
10. To transfer competition case dossiers to the Competition Council in cases where the competition cases involve competition-restricting acts;
11. To settle complaints and denunciations falling under the competence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 ***Article 77.-*** Powers of investigators when conducting competition procedures

When conducting competition procedures, investigators shall have the following powers:

1. To request related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supply necessary information and documents concerning competition cases;
2. To request the investigated parties to supply documents and give explanations concerning competition cases;
3. To propose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to request expertise;
4. To propose the head of the competition managing agency to apply administrative preventive measures to competition cases.

**Article 78.-** Obligations of investigators when conducting competition procedures:

When conducting competition procedures, investigators shall have the following obligations:

1. To hand the investigation decisions of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to the investigated parties;
2. To keep confidential business secrets of enterprises;
3. To preserve the supplied documents;
4. To investigate competition cases assigned by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5. To make investigation reports upon termination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or official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cases;
6. To take responsibility to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and before law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tasks and powers.

**Article 79.-** Tasks and powers of the Competition Council chairman when conducting competition procedures

1. To set up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under the provisions of Clause 3, Article 54 of this Law.
2. To decide to chang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embers, the hearing's clerks, experts or interpreters before opening a hearing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Clause 1 of Article 73, Article 83 and Clause 1 of Article 85 of this Law.
3. To decide to appoint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embers, the hearing's clerks to replace those who are changed during the hearing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Clause 2, Article 85 of this Law.
4. To decide to apply, change or cancel administrative preventive measures when receiving competition case dossiers.

**Article 80.-** The Competition Case- Handling Council

1. When settling competition cases, the Competition Case- Handling Council shall work independently and only abide by law.
2. Decisions on handling competition cases shall be adopted by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by majority vote; where the numbers of votes for and against are equal, decisions shall be made according to the side sharing the opinion of the hearing's president.

**Article 81.-** Tasks and powers of the president of a hearing

The president of a hearing shall have the following tasks and powers:

1. To organize the study of competition case dossiers;
2. On the basis of the decision of the Competition Case- Handling Council, to sign the proposal to the Competition Council chairman to apply, change or cancel administrative preventive measures; decide to return the competition case dossier to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and request additional investigation; decide to stop the settlement of the competition case;
3. On the basis of the decision of the Competition Case- Handling Council, to sign the decision to open the hearing;
4. To decide to summon participants to the hearing;
5. To sign and announce the decision on the handling of the competition case and other decisions of the Competition Case- Handling Council;
6. To carry out other activities under his/her competence prescribed by this Law when handling the competition case.

**Article 82.-** Clerks of hearings

1. The clerk of a hearing shall have the following tasks and powers:
  - a/ To prepare necessary professional jobs before the opening of a hearing;
  - b/ To announce the rules of the hearing;
  - c/ To report to the Competition Case- Handling Council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ose summoned to the hearing;
  - d/ To write the minutes of the hearing;
  - e/ To perform other jobs assigned by the president of the hearing.
2. The clerk of a hearing must refuse to conduct competition procedures or be changed in the cases prescribed in Article 83 of this Law.

**Article 83.-** Cases of refusal or change of Competition Case- Handling Council members, investigators, the hearing's clerks, experts, interpreters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embers, investigators, the hearing's clerks, experts, interpreters must refuse to perform their tasks or shall be changed in one of the following cases:

1. They are relatives of the complainants or investigated parties;
2. They are persons with interests, obligations related to the competition cases;
3. There are other explicit grounds to deem that they shall not be impartial when performing their tasks.

**Article 84.-** Procedures for refusal to conduct competition procedures or request for change of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embers, the hearing's clerks

1. The refusal to conduct competition procedures or request for change of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embers, the hearing's clerks before the opening of the hearings must be made in writing, clearly stating the reasons and grounds therefor.
2. The refusal to conduct competition procedures or request for change of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embers, the hearing's clerks during the hearings must be recorded in the hearings' minutes.

**Article 85.-** Deciding on change of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embers or the



hearing's clerks

1. Before a hearing is opened, the change of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embers, the hearing's clerk shall be decided by the Competition Council chairman.

2. During a hearing, the acceptance of the change of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embers or the hearing's clerk shall be decided by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refusing persons or the persons requested to be changed.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shall discuss behind closed doors and make decision by majority vote.

If it is necessary to chang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embers or the hearing's clerk,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shall issue a decision to postpone the hearing. The appointment of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embers or a hearing's clerk to replace those who must be changed shall be decided by the Competition Council chairman.

#### ***Section 4.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CASES***

##### ***Article 86.-*** Preliminary investigatio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cases shall be conducted under decisions of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in the following cases:

1. Competition case dossiers have been accepted by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2.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detects signs of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 ***Article 87.-*** Time limit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1. The time limit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thirty days a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decisions.

2. Within the time limit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investigators assigned to investigate competition cases must complete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propose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to issue a decision to stop investigation or conduct official investigation.

##### ***Article 88.-*** Decisions to stop investigation, decisions to conduct official investigation

On the basi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results and the proposals of investigators,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shall issue one of the following decisions:

1. To stop investigation i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results show that there are no acts of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2. To conduct official investigation i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results show that there are acts of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 ***Article 89.-*** Contents of official investigation

1. For cases of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 abuse of the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or abuse of the monopoly position, or economic concentration, investigation shall covers:

- a/ Identifying the relevant market;
- b/ Verifying the investigated party's market share on the relevant market;
- c/ Collecting and analyzing evidences on violation acts.

2. For cases of unfair competition, investigators must identify the grounds to deem that the investigated parties have performed or are performing unfair competition acts.

**Article 90.-** Time limit for official investigation

The time limit for official investigation is prescribed as follows:

1. For cases of unfair competition, the time limit for official investigation shall be ninety days a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decisions; in case of necessity, this time limit may be extended by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for another sixty days at most;

2. For cases of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 abuse of the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or abuse of the monopoly position, or economic concentration, the time limit for official investigation shall be one hundred and eighty days, a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decisions; in case of necessity, this time limit may be extended by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no more than twice, each time for sixty days at most;

3. The extension of the investigation time limit must be notified by investigators to all related parties not later than seven working day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investigation time limit.

**Article 91.-** Investigation minutes

1. When conducting investigation, investigators must make investigation minutes, clearly indicating the investigation time and place, investigators, investigated party, investigated contents and complaint and/or claim of the investigated party.

2. Investigation minutes must be read out by investigators to the investigated party before they both sign the minutes.

3. If the investigated party refuses to sign the minutes, investigators must record such in the minutes together with the reason therefor.

**Article 92.-** Request to invite witnesse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1.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the involved parties may request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to invite witnesses. The requestors shall be obliged to state the reasons for inviting witnesses to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for decision.

2.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s invitation to a witness must clearly indicate the full name and address of the invitee, time and place for giving testimony, the parties and subject involved in the case.

3. Testimonies of witnesses must be recorded in minutes by investigators, which shall be read out to the witnesses before they both sign the minutes.

**Article 93.-** Investigation reports

1. After the termination of investigation,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must transfer the investigation reports together with the whole competition case dossiers related to competition-restricting acts to the Competition Council.

2. An investigation report shall contain the following principal contents:

- a/ A brief account of the case;
- b/ Verified circumstances and evidences;
- c/ Proposed handling measures.

**Article 94.-** Transfer of dossiers of competition cases involving criminal signs

If, through investigation, it is detected that a competition case shows criminal signs, investigators must promptly propose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to consider and transfer the relevant dossier to competent State agencies for institution of criminal cases.

**Article 95.-** Return of dossiers in case of availability of grounds for non-institution of criminal cases

Where state agencies with competence to institute criminal cases find that there are grounds for non-institution of criminal case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y must return the dossiers to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for further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this Law. The investigation time limit prescribed in Article 90 of this Law shall be counted as from the date the dossiers are--received back.

**Article 96.-** Additional investigation, time limit for additional investigation

1. Competition case investigators must conduct additional investigation if it is so requested in writing by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2. The time limit for additional investigation is sixty days, a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s written requests for additional investigation.

**Article 97.-** Responsibilities for coordination and support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Local administrations, police agencies, other agencies and organizations shall have to coordinate and support the investigation process at the request of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 **Section 5. HEARINGS**

**Article 98.-** Competition cases must be considered and handled through hearings

Competition cases falling under the settling competence of the Competition Council must be considered and handled through hearings.

**Article 99.-** Preparation for opening a hearing

1. After receiving the investigation report and the complete competition case dossier, the Competition Council chairman shall decide to set up a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2. Within thirty days after receiving the competition case dossier, the Competition Case Handling Council must issue one of the following decisions:

a/ To open a hearing;

b/ To return the dossier for additional investigation;

c/ To stop settling the competition case.

3. Within fifteen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decision to open a hearing,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ust open a hearing.

4. In case of returning the dossier for additional investigation, within fifteen days after the date of receiving back the dossier,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ust issue one of the

decisions defin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Article 100.-** Return of dossiers for additional investigation

If finding that the collected evidences are not enough for determining acts of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shall decide to return the dossiers for additional investigation.

**Article 101.-** Stoppage of settlement of competition cases falling under the settling competence of the Competition Council

1.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shall decide to stop settling competition cases falling under the settling competence of the Competition Council in the following cases:

a/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proposes to stop settling the competition case if there are not enough evidences of acts of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and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deems such proposal justified;

b/ The investigated party has voluntarily terminated its violation acts, remedied consequences and the complainant has voluntarily withdrawn its written complaint;

c/ The investigated party has voluntarily terminated its violation acts, remedied consequences and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proposes to stop settling the competition case, for cases where investigation has been conducted under the provisions of Clause 2, Article 65 of this Law.

2. Decisions to stop settling competition cases must be sent to the investigated parties and the complainants (if any) as well as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Article 102.-** Decisions to open hearings

1. A decision to open a hearing must be handed to the parties named therein not later than ten days before the date of opening of the hearing.

2. A decision to open a hearing must contain the following contents:

a/ The investigated party;

b/ The complainant or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for cases where investigation has been conducted under the provisions of Clause 2, Article 65 of this Law;

c/ Violated articles and/or clauses of this Law;

d/ Time and place of opening of the hearing;

e/ The hearing is to be held in public or behind closed doors;

f/ Full names of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embers;

g/ Full names of investigators who have investigated the competition case, the hearing's clerk;

h/ Full names of lawyers;

i/ Full name of the interpreter;

j/ Full names of witnesses;

k/ Full names of experts;

l/ Persons with related interests and obligations.

**Article 103.-** Summoning of persons who must appear at the hearings

On the basis of the decisions to open the hearings,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shall send summonses to persons who must appear at the hearings not later than ten days before the date of opening of the hearings.

**Article 104.-** Hearings

1. Hearings shall be held in public. Where the contents of a hearing are related to national secrets or business secrets, the hearing shall be held behind closed doors.

2. Participants to a hearing include:

a/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members, the hearing's clerk;

b/ The investigated party;

c/ The complainant;

d/ Lawyers;

e/ Investigators who have investigated the competition case;

f/ Other persons named in the decision to open the hearing.

3. After hearing the opinions and arguments presented by the participants to the hearings,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shall discuss, cast secret votes and make decision by majority vote.

**Section 6. EFFECT OF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Article 105.-**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1. A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 shall contain the following principal contents:

a/ A brief account of the case;

b/ Analysis of the case;

c/ Conclusion on the handling of the case.

2. The hearing presidents must sign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3.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must be sent to the related parties within seven working date after the date of its signing.

**Article 106.-** Effect of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shall come into force thirty days after the date of its signing provided that during this period they are not complained abou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07 of this Law.

**Section 7. SETTLEMENT OF COMPLAINTS ABOUT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WHICH HAVE NOT YET COME INTO FORCE**

**Article 107.-** Complaining about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1. If the involved parties disagree with part or the whole of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issued by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they may lodge complaints with the Competition Council.

2. If the involved parties disagree with part or the whole of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issued by the head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they may lodge complaints with the Trade Minister.

**Article 108.-** Written complaints about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A written complaint about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 must contain the following principal contents:

- a/ Date of making;
- b/ Name and address of the maker;
- c/ Serial number and date of the complained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
- d/ The reason for complaining and the complainant's claim;
- e/ The signature and seal (if any) of the complainant.

2. Written complainants must be addressed to the agencies issuing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in question together with supplementary evidences (if any) proving that the complaints are grounded and lawful.

**Article 109.-** Acceptance of written complaints about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Within five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the written complainants about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the agencies which have issued such decisions must check the validity of the written complaint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08 of this Law.

**Article 110.-** Consequences of complaints about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1. The complained parts of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shall not be executed.
2. Within fifteen days after receiving the written complaints about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the agency accepting such written complaints shall have to consider and transfer them together with the whole competition case dossiers as well as their proposals on the written complaints to the Competition Council or the Trade Minister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07 of this Law.

**Article 111.-** Time limit for settling complaints about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Within thirty days after receiving the complaint dossiers, the Competition Council or the Trade Minister shall have to settle the complaints according to competence; in specially complicated cases, the time limit for settling complaints may be extended for another thirteen days at most.

**Article 112.-** Powers of the Competition Council when settling complaints about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of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When considering and settling complaints about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of the Competition Case- Handling Council, the Competition Council shall have the following powers:

1. To hold up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if deeming that the complaints are not sufficiently grounded;
2. To amend part or whole of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if such decisions are illegal;
3. To cancel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and transfer the competition case dossiers to the Competition Case- Handling Council for resettlement in the following cases:
  - a/ Evidences have not yet been fully collected and verified;
  - b/ The composition of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contravenes the provisions of

this Law or other serious violations of competition procedures were committed.

**Article 113.-** Powers of the Trade Minister when settling complaints about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When considering and settling complaints about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of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the Trade Minister shall have the powers defined in Clause 1 and Clause 2, Article 112 of this Law, the power to cancel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and request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to resettle the case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this Law in cases where evidences have not yet been fully collected and verified.

**Article 114.-** Effect of complaint-settling decisions

Decisions to settle complaints about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shall come into force as from the date of signing.

**Article 115.-** Initiation of lawsuits against complaint-settling decisions

1. If the involved parties disagree with the decisions to settle complaints about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they may initiate administrative lawsuits against part or the whole of the contents of such decisions at the competent provincial/municipal People's Courts.

2. Where the courts accept the written lawsuits against the decisions to settle complaints about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Clause 1 of this Article, the Trade Minister and the Competition Council chairman shall have to direct the transfer of the competition case dossiers to the courts within ten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the court's requests.

**Article 116.-** Consequences of lawsuits

Those parts of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which are not sued against at court shall continue to be executed.

## **Section 8. HANDLING OF VIOLATIONS OF COMPETITION LEGISLATION**

**Article 117.-** Forms of sanctioning violations of competition legislation and measures to remedy consequences

1. For each act of violation of competition legislation, violating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shall be subject to one of the following principal sanctioning forms:

- a/ Warning;
- b/ Fine.

2. Depending on the nature and seriousness of their violations, the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violating competition legislation may be subject to one of the following additional sanctioning forms:

- a/ Revocation of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s, deprivation of licenses and practicing certificates;
- b/ Confiscation of exhibits and means used for commission of violations of competition legislation.

3. In addition to the sanctioning forms prescribed in Clause 1 and Clause 2 of this Article,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violating competition legislation may b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one or more than one of the following consequence remedying measures:

- a/ To restructure the enterprises having abused their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 b/ To divide or split the merged or consolidated enterprises; to force the resale of the acquired enterprise parts;
- c/ To make public corrections;
- d/To remove illegal provisions from the business contracts or transactions;
- e/ Other necessary measures to overcome the competition restriction impacts of the violation acts.

If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violating competition legislation cause damage to the interests of the Stat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hey must pay compensation therefor according to law provisions.

**Article 118.-** Levels of fine imposed for acts of violating competition legislation

1. For acts of violating the provisions on competition restriction agreements, abuse of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abuse of monopoly position or economic concentration, the agencies with sanctioning competence may impose fines of up to 10% of total turnover earned by the violating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in the fiscal year preceding the year when they commit violation acts.

2. For acts of violating the provisions on unfair competition and other acts of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is Law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the agencies with sanctioning competence shall impose fines according to law provisions on handl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or relevant law provisions.

3.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the levels of fine imposed for acts of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is Law.

**Article 119.-** Competence to sanction, handle violations of competition legislation

1.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Council and the Competition Council shall have the following powers:

- a/ To issue caution;
- b/ To impose fine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Clause 1, Article 118 of this Law;
- c/ To confiscate exhibits and means used for commission of violations of competition legislation;
- d/ To apply the measures prescribed at Points c, d and e, Clause 3, Article 117 of this Law;
- e/ To request competent state agencies to revok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s, deprive of licenses and/or practicing certificates;
- f/ To request competent state agencies to apply the measures prescribed at Points a and b, Clause 3, Article 117 of this Law.

2. The competition-managing agency may apply the measures prescribed at Point a of Clause 1, Point b of Clause 2, Point c of Clause 3, Article 117 and Clause 2, Article 118 of this Law.

3. Other agencies with sanctioning competence shall sancti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unfair



competition acts according to law provisions on handl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Article 120.-** Handling of violations committed by state officials and employees

State officials and employees who commit acts of violation of competition legislation shall, depending on the nature and seriousness of their violations, be disciplined or examined for penal liability; if causing any damage, they must pay compensation therefor according to law provisions.

**Article 121.-** Execution of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1. After thirty days as from the date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come into force, if the parties obliged to comply with such decisions fail to voluntarily comply with and do not initiate lawsuits at court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7 of this Chapter, the parties in favor of which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are executed may request in writing the competent state agencies to organize the execution of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functions, tasks and powers.

2. Where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are related to the property of the parties bound to comply with the decisions, the parties in favor of which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are executed may request the civil judgment-executing agencies in the provinces or centrally run cities where the parties obliged to comply with the decisions are headquartered, reside or their property is located to organize the execution of the competition case-handling decisions.

## **Chapter VI**

### **IMPLEMENTATION PROVISIONS**

**Article 122.-** Implementation effect

This Law shall take effect as from July 1, 2005.

**Article 123.-** Implementation guidance

The Government and the Supreme People's Court shall detail and guide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This Law was passed on December 3, 2004 by the XIth National Assembl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t its the 6th session.*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NGUYEN VAN AN**